

제313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3년2월6일(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 차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차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노동조합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안
7.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8.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9.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10.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11.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12.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13.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
14.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정신계승 보상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
15.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
16.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3.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4.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5. 경찰대학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6.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7.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8.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0.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3.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된 안건

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영 의원 대표발의)	3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
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
4.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종 의원 대표발의)	10
5.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6. 노동조합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12
7.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19
8.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박기춘 의원 발의)	19
9.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19
10.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19
11.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최재천 의원 대표발의)	19
12.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19
13.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1
14.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정신계승 보상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21
15.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설훈 의원 발의)	21
16.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 의원 대표발의)	24
17.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복 의원 대표발의)	24
18.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의원 대표발의)	26
1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	26
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7
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종 의원 대표발의)	27
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7
23.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32
24.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	32
25. 경찰대학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35

26.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39
 27.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39
 28.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발의) 39
 2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39
 30. 경비업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임수경·진선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39
 3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규 의원 대표발의) 39
 3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9
 33.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39
 34.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6
 3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우 의원 대표발의) 49
 3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록 의원 대표발의) 49

(14시23분 개의)

○소위원장 황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의 내용과 같이 모두 4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이 많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영 의원 대표발의)

○소위원장 황영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내용은 주택 거래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거래한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아래 표와 같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취득세를 감면할 경우에 2조 9000억 원가량의 세수가 감소되므로 세수 감소분

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취득세 감면의 효과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보다는 거래시점만 변경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감면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개정안은 취득세 부담을 완화시켜 주거 안정 및 주택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취득세 감면 시 발생하는 지방세 수입 감소분에 대한 보전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제2차관 이삼길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영 의원님께서서는 1년간으로 했는데 정부에서는 협의하기를 한 6개월 정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재정 보전 문제 부담도 좀 줄일 수 있는 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柱 委員 이 부분에는 별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박성호 위원 이 부분에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전해 줘야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추산돼요?

○유대운 위원 2조 9000억에서 6개월로 가니까 1조 4500억 그 정도고, 9월 달에……

○소위원장 황영철 유대운 장관님, 정부 측 발언하십니까?

○**유대운 위원** 정부에 묻는 거예요?
 ○**박성호 위원** 잘하셨습니다. 알려 주시면 좋지, 관심 사항이니까.
 ○**소위원장 황영철** 정부 측에서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제2차관 이삼걸**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은 한 2조 9000억에서 6개월이면 1조 4500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실제적으로 1월부터 6월까지 지나고 난 뒤에 또는 1년 지나고 난 뒤에 정산을 해야 금액이 된다고, 이것은 하나의 예측치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이 액수의 감면, 감면 액수만큼, 옛날 같으면 반반이지요. 액수만큼 실제적으로 보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법안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부칙으로 할 수 있으면 좋고 부칙의 성격에 안 맞으면 부대의견이라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운 위원** 부대의견을 당연히……
 ○**김현 위원** 그러면 6개월 하고 나서 또 연장하는 것을 여기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안전부제2차관 이삼걸** 지금은 그렇게 상향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1년을 하면, 보통 우리가 해 보니까 사람들이 시점을 재고 있다가 하반기에 몰리고 상반기에는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감면을 하면 앞에 살 것을 미리 당겨서 산다든가 이런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1년 다 해 놔 버리면 상반기에는 금방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기간을 이렇게 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임시방편이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니까. 계속 국회가 세수를 깎아 주는 것에 법안을 내고, 내고 이려는 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제2차관 이삼걸**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 대책 중에 취득세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것이 전부도 아니고 아주 일부분인데, 다른 효과인데……
 ○**김현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지방 경제만, 지방자치단체만 어려워지는 걸로……
 ○**박성호 위원** 보전해 주는 거니까……
 ○**김현 위원** 보전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데 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제2차관 이삼걸** 종합적인 대책은 국토해양부하고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데 사실

취득세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희들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지방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만약에 무너져 버리면 지방의 세수기반인 취득세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으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지만 몇 가지 써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반대할 수도 없고 하는데 자치단체별로 반대도 있고 한데 우리가 보전만 주면 설득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金永柱 委員** 그러면 부칙을 하면 정부 측에서는 어떤 부분을 부칙으로 하면 좋겠어요?
 ○**행정안전부제2차관 이삼걸** 부칙은 거기에 대해서까지 감면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금액 전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부칙을 넣어 주면 좋지요.
 ○**김민기 위원** 계속 시한이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제2차관 이삼걸** 사실은……
 ○**김민기 위원** 아니, 지금 충분히 국민들께서는 내성을 가졌어요, 내성을. 그러니까 ‘곧 또 연장 되겠다’ 그래서 효과가 전혀, 그냥 세수만 줄어드는 결과가 있고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것, 즉 예를 들자면 1년을 못을 박아서 더 이상은 없단다지 이런 것은 없어요?
 ○**행정안전부제2차관 이삼걸** 사실은 저희들이 6개월 하는 것은 6개월 하고 끝난다는 그런 의미인데……
 ○**김민기 위원** 국민들은 전혀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부동산 관계자들 미팅을 해 봤는데 이미 예방주사를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이제는 효과가 전혀 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아예 한시적으로 6개월 연장 이런 것보다도 정부 정책의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이제 픽스(fix)하고, 고정시켜 놓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시점이지 계속 이렇게 되어서 때 되면 정치권에서 야단맞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金永柱 委員** 여하튼 정부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백번 이해는 되는데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 10% 정도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 이제 연장을 해서 부동산을 취득한다 하는 개념을 가진 사람은 한 10%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보는데 10% 정도 가지고 꼭 6개월을 하자 그럴 필요가 있겠으나, 부동산이 활성화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했다가 법 또 바꾸면 되잖아요.

○**행정안전부제2차관 이삼걸** 하여튼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사람으로 치면 사람이 죽어 가는데 어떤 약을 써야 될지, 종합적으로 써야 될 때 이거라도 필요하다 하면 써야 되듯이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다른 것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금융 쪽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하고 기재부하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부동산 경기가 너무 완전히 가라앉고 난 뒤에 약 쓰면 어려우니까 지금이라도 소비 심리를 자꾸 자극하는 의미에서 한번 써 보자 하는 의미거든요, 심리적으로 심리를 자꾸 자극하는 의미에서. 그런데 지난번에 할 때 너무 기간이 짧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기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6개월이라고 한시적으로 하면 남아 있는 시간이 한 4개월여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4개월 이내에 집을 사야 되는데 4개월 이내에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장구지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8, 9월에 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면 여기서 더 있어야 되겠다'라든지 장기적인 플랜을 소비자들, 주택 구입자들이 갖게 되면 오히려 주택 경기를 더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지 매번 3, 4개월의 여유를 두면서 이렇게 하면 이것은 오히려 내성을 키워서 오히려 이사를 안 가게끔 만드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역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1년을 주고 1년이라면 자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집은 어떻게 이사해야 되겠고 이런 계획들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자꾸 4개월 남은 기간으로 또 법을 해서 만들고 그러지 말고 그냥 1년으로 정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냅니다.

○**박성호 위원** 원안대로?

○**김민기 위원** 물론 지방세수 확보의 전제 조건 하에서.

○**소위원장 황영철** 정리해 보겠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것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여야를 떠나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서 여러 가지 정책 중에, 또 좀 아쉽지

만 우리 행안위와 관련된, 행안부와 관련된 법률안이 되기는 했는데 여야를 떠나서 아마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일단 의결하고자 하는데……

○**행정안전부제2차관 이삼걸** 위원장님, 기획재정부에서 온 담당 국장님 혹시……

○**소위원장 황영철** 말씀해 보세요.

○**기획재정부행정예산심의관 노형욱** 기간 문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너무나 거래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풀어 보고자 하는 대책인데 아까 행안부차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년으로 해 놓으면 사실은 힘든 게 상반기에 대한 경기 대책 부분인데 그 부분이 상반기 중에는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될 것 기왕이면 아예 세율을 낮춰 버리든가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그러면 지방세수들은 줄어든 만큼 다른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되거든요. 패키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선불리 결정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상태에서 좀 한시적으로 딱 정해서 하는 게 시장에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예를 들어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또 할 것이다 하는 사인을 준다면 똑같이, 우리가 기대하는 부양 효과는 안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대책 할 때는 6개월 한시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그 이후의 문제는 아까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오늘 이 소위 통과시키고 본회의 표결하는 기간이 있고 또 공포해 가지고 직접 시행이 되기까지 한 보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름 이상 소요되나요? 바로 시행하려면 얼마가 걸립니까? 오늘 해서 저희가 가장 빠른 본회의가……

○**유대운 위원** 최소한 15일 정도?

○**기획재정부행정예산심의관 노형욱**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11년도에 10개월간 감면 대책을 할 때는 당시에 정부가 먼저 대책을 발표해서 대책 발표일로부터 적용을 했고요. 작년에 3개월 한 것은 상임위, 행안위에 통과한 시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시점에 대한 것은 공포일이 아니고 상임위 통과하는 날로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좀 더 당겨서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절차상 걸리는 시간은 조금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운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유대운 위원인데요.

두 가지의 문제가……

○**소위원장 황영철** 잠깐만요.

진영 의원님실에서 나오신 보좌관님! 진영 의원님이 이 발의하신 분이시잖아요. 이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본인의 생각이 어떠신지를 여쭙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金永柱 委員** 8월 말 한시적으로 이렇게 가면 6개월 여유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래야 해도 안 넘기고 어느 정도 위기감도 조성되고……

○**행정안전부제2차관 이삼걸** 말씀 좀 드릴게요.

○**소위원장 황영철** 예.

○**행정안전부제2차관 이삼걸** 적용 시점을 지난 번에는 우리가 양도소득세하고 같이 걸려 있어 가지고 상임위 통과한 날로 잡았는데……

○**유대운 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발언권을……

○**행정안전부제2차관 이삼걸** 아까 노 국장님 얘기했을 때 2011년도 할 때는 사실 정부에서 발표를 3월 22일 날 하고 통과는 5월 24일인가 이렇게 되었는데 두 달 뒤에 되었지만 3월 22일 날 짜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래가 그때부터 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주택 거래는 우리가 계약을 하고부터 막 대금 주고 하는 것은 거의 두 달 걸립니다. 걸리지만 괜히 거기 한두 사람이 빠져 가지고 내가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항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이게 민원이 커요.

이번에 이것 다시 연장하게 되는 것도 작년 말에 우리가 선거 과정에서 사실 정치권에서도 이걸 연장하겠다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아, 이것은 1월 1일부터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1월 1일부터 해도 이것 한 그 사이에 대상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1월 1일부터 했고 6개월까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유대운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황영철** 예, 유대운 위원님 말씀 하

세요.

○**유대운 위원** 작년에 했던 것은 소급입법이 원래 취지였어요. 그러다 양도소득세하고 취득세 감면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상임위 통과된 날로 해서 그 날짜로 해서 최종 시행한 것으로 이렇게 해결된 것이고요.

문제는 감세분이 판 그대로 적용해 주면 되는데 2011년도에 감세분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이라면 기재부에서 이 돈을 다 안 주었습니다. 너무 많이 팔아서 소득 감세분이 너무 많으니까 이 돈을 다 주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나 행안부의 신뢰를, 기재부의 약속이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법령 만들 때도 부칙이나 이런 것을 그대로 박지 않은 결과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신뢰를 잃은 건이다 그래서 신뢰를 잃은 건이, 아직도 교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교부가 안 되고 있는데 이 금액이 2362억 원입니다.

금년에 몇 월쯤 이게 교부될 것 같습니까?

○**기획재정부행정예산심의관 노형욱** 사실관계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362억 그것은 금년도 13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요. 기재부 소관의 목적예비비로……

○**유대운 위원** 금년에 집행됩니까?

○**행정안전부제2차관 이삼걸** 예, 집행됩니다.

○**유대운 위원** 몇 월쯤 집행될 것 같습니까?

○**기획재정부행정예산심의관 노형욱** 그거야 지금 행안부가, 작년 3개 월 부분에 대한 게 지금 현재 가결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지방에 돈을 빨리 내려 보내드리기 위해서는, 확실히 결산이 나오려면 시간이 더 있어야 됩니다마는 그중에 80%가 되었건 90%가 되었건 빨리 교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2362억이 정부가 약속을 안 지키고 지금을 안 한다는 것은 팩트가 틀린 겁니다.

○**유대운 위원** 조금 다르지만 내용이 큰 범위에서는 같습니다. 작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컸거든요.

○**기획재정부행정예산심의관 노형욱** 작년에 거기에 대한 논의가 수없이 있어서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 주셨지 않습니까?

○**유대운 위원** 인정하실 것은 국장님도 인정하시고 안 주려다가 여기저기서 다 귀찮게 하니

결국은 결과적으로 손을 드는 결과가 되었는데 그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돼요. 지방자치단체에 이게 전체 다 감면내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수도권에 집중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핑크 나고 그런 입장인데 대중 작년 2012년도분 정산이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행정안전부제2차관 이삼걸 2011년도분이요?

○유대운 위원 12년도분이요. 몇 개월……

○행정안전부제2차관 이삼걸 작년 말에 한 것?

○유대운 위원 예.

○행정안전부제2차관 이삼걸 2월 중순쯤 되면 그때……

○유대운 위원 2월 중순이면 이것을 기재부로 통보를 해서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3월 쯤은 다 해결이 되겠네요?

○기획재정부행정예산심의관 노형욱 2월 15일자 정도로 가결산하게 되고요. 최종 결산이 나오는 것은 4월쯤 나오게 됩니다마는 4월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가결산 결과가 나오면 그것으로 중간정산을 합니다.

○유대운 위원 그러면 2362억 원은 지금 예비비에 들어 있는 겁니까?

○기획재정부행정예산심의관 노형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 100억 나가야 된다 하면 그중에 한 팔구십 % 정도 되는 그 부분을 먼저 지급을 하고 최종 결산이 확정되면 나머지는 정산을 하겠다……

○유대운 위원 정산이 다 끝난 다음에?

○기획재정부행정예산심의관 노형욱 예.

○유대운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2011년도분 2362억 원과 2012년도 분 결산이 총 되어서 되면 최종 결산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우선 가결산이 나오면 그중에서 90% 정도를 늦어도 4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도착하게 해 주겠다 이렇게 들어도 됩니까?

○기획재정부행정예산심의관 노형욱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제2차관 이삼걸 예, 그렇습니다.

○유대운 위원 예를 든다면.

○행정안전부제2차관 이삼걸 그렇습니다.

○유대운 위원 더 빨리 하면 더욱 고마운 얘기지만 아무리 늦어도 4월 안에는 완결판이 나올 수 있다?

○기획재정부행정예산심의관 노형욱 예, 최종 정산하는 것은 정부의 결산이 확정이 되면 그때 확정을 하고……

○행정안전부제2차관 이삼걸 2월 중에 완전히 확정이 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행정예산심의관 노형욱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최대한 먼저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운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서 지방재정에 충당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더 이상 질의하시거나 의견을 내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정부 측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6개월로 단축시켜서, 6월 30일까지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6월 30일까지 주택거래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위원장님, 그 지방……

○유대운 위원 이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아야 되는데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보전 대책은 부대의견 안 달아도……

○유대운 위원 국고보전 대책을 달지 않으면 또 나중에 2012년도 문제처럼 나오거든요. 반드시 달아야 된다고요.

○소위원장 황영철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세수 감모분에 대한 보전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대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운 위원 달도록 해서 다시 해야지.

○소위원장 황영철 이 정도로 의사록에 남기면 되지 않겠어요? 부대의견을 여기다 달자 이거예요?

○유대운 위원 예, 달지 않으면 나중에 또 분쟁이 생겨요.

○박성호 위원 한 건 달아주고 가지요.

○소위원장 황영철 전문위원이 정리한 내용으로 보면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면액 전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보전 부대의견을……

○유대운 위원 보전 규모, 감액을 전액 지원하

되 국고보조 한도를 설정하여 정부, 지자체 간 부담 분담, 행안부 요구대로 보전 시 세수가 예전보다 증가하는 모순 발생, 정부가 빚내서 지자체 지원하는 결과 이런 것인데 이 부분을 명확히 달지 않으면 2011년도하고 똑같은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달면 좋겠어요? 전문위원!

행안부가 제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황영철 행안부에서 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행정안전부제2차관 이삼걸 저희들이 원래 부칙에 넣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부칙의 성격이 아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부칙에 들어갈 성격은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제2차관 이삼걸 그래서 성격이 아니면 부대의견으로, 그 내용이 저희들이……

○소위원장 황영철 이 내용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의사록에 하고 기재부의 동의를 여기서 얻으면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면액 전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기재부에서 동의하시지요?

○유대운 위원 잠깐만요. ‘보고해야 한다’가 아니라 ‘보전하여야 한다’지. 보고는 의미가 없으니까 보전입니다, 보전.

○소위원장 황영철 방안을 마련하면 보전하는 것 아니에요?

○유대운 위원 달라요.

○박성호 위원 그렇게 복잡하게 할 게 뭐 있어요? 보전하라고 하면 되지. 국회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으면 보고해서 그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안전하게 안심하게 해 주어야지.

○유대운 위원 당연하지요.

○소위원장 황영철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면액 전액을 보전해야 한다, 동의하시지요?’

○박성호 위원 기간은 필요 없어요?

○기획재정부행정예산심의관 노형욱 기간은 없어요. 법조문에……

○유대운 위원 법조문에 있으니까.

○소위원장 황영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칙 조항에 넣기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이 의견을 말씀드렸고 기재부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법률과 똑같은 그런 의무규정으로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주지하시고 반드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행정예산심의관 노형욱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안전부제2차관 이삼걸 그것을 다시 부연하면 지난 3·22대책이나 작년에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해석이 또, 전과 해석이 또 갈라질 수 있으니까, 지난번에 했던 예가 있으니까 그 예대로……

○유대운 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것에 문제가 발생해서 작년도 2012년도의 감면대책과 똑같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제2차관 이삼걸 예, 작년 것하고 12월 달 것하고요.

○소위원장 황영철 넘어가겠습니다.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시47분)

○소위원장 황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내용은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 신설하는 것과 토지 등의 수용 및 보상 주체 그리고 도로점용 인공구조물 등의 이설 비용부담 주체를 명문화하는 그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농어촌도로 정비를 위해서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고 공고한 경우에는 인·허가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협의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하고 이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하는 협의 간주처리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인·허가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토지 등의 수용 및 보상 주체 명문화

방안도 현행법으로는 토지 등의 수용 및 보상, 보상협의 주체가 군수로 한정되어 있는데 군수 또는 도로정비 허가를 받은 자도 포함해서 명문화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도로점용 인공구조물 등의 이설 비용을 지금 현재는 군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 또는 도로정비 허가를 받은 자로 포함해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체계상 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제2차관 이삼걸 예,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 저희들은 다 동의를 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협의기간을 20일로 한정하는 것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이고 현재 군수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군수나 도로정비 허가를 받은 자로 한 것은 실제 저희들이 법 해석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대로 수용합니다.

○金永柱 委員 이의는 없는데 한번 물어 봅시다.

지금 현재 도로를 예를 들어서 가스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로를 뚫다 그러면 그 주체가 가스공사 여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제2차관 이삼걸 예.

○金永柱 委員 파는데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게 가스공사인데 가스공사에서 도로를 예를 들어서 점용해 가지고 했던 매설물을 보수를 하든지, 점용허가를 내든지, 또 그렇게 하든지, 만에 하나 이 가스공사 같은 데서는 도로를 파고, 가스관을 자기 부담으로 하니까 안 한다 말이에요. 안 하는데 민간이 다급해서, 실제 사용자가 다급해서 이런 가스관을 파고 도로 아스팔트를 자기가 하려고 해도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정안전부제2차관 이삼걸 해석상으로 이 부분은 약간 성격은 틀리지만 만약 군에서 허가를 해 주면 그 사람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용시설을 개인이 마음대로 파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자치단체에서 허가를 해 주면 비용부담은 자기 부담으로 하더라도 여기에서 말 그대로 도로

정비 허가를 받은 자니까 꼭 정비라는 말이 들어갔지만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할 경우에 군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허가를 해 주면 자기 부담으로, 물론 조건에는 자기가 부담하는 조건이 되겠지요. 그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소위원장 황영철 다른 위원 의견 없으시지요?
○金永柱 委員 이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전국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것이……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소위원장 황영철 위원님, 부가적인 내용은 차후로 충분히 협의하시기로 하시고요.

○金永柱 委員 예.

○소위원장 황영철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14시51분)

○소위원장 황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것도 농어촌도로 정비법과 마찬가지로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을 신설하고 공공시설물 관리권에 대한 시·도지사 승인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 신설하는 것은 지방소도읍 육성을 위해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인·허가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하고 이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하는 협의 간주처리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 공공시설물 관리권에 대한 시도지사 승인권한 폐지하는 것은 지방소도읍 사업으로 개발한 공공시설물을 위탁관리 하는 경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와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현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이것을 폐지해서 시장·군수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이 법률안도 앞선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거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실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제 판단이 옳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홍문중 의원 대표발의)

5.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14시54분)

○소위원장 황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의 정의에 전기자전거도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홍문중 의원님과 강창일 의원님 두 분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홍문중 의원님 안은 자전거의 정의에 전기자전거를 포함하도록 해서 전기자전거의 개발과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문중 의원님 안은 전기자전거의 정의를 최고 속도를 시속 25km로 하고, 차체 중량은 40kg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강창일 의원님은 전기자전거의 정의를 최대 출력 330W 미만, 최대 전압 48V 이하로서 최고 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만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전기자전거를 도입할 경우에는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고 속도와 차체 중량을 제한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이런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 속도와 차체 중량을 제한하는 방법이 강

창일 의원님 안은 너무 기술적이고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최고 속도와 차체 중량을 제한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 수정안을 조금 마련해 봤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리는 수정안을 보면 단서 조항으로 추가를 했는데요. 전기자전거의 정의를 전동기를 장착한 자전거 중 전기 동력에 의한 최고 속도가 시속 25km 미만이고, 부착된 장치를 포함한 자전거의 무게가 30kg 미만인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제2차관 이삼걸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강창일 의원 안에 보면 시속하고 차체 중량을 빼고 다른 기술적인 문제, 모터의 출력이라든가 배터리의 전압 같은 이런 문제는 하위 법령에다 필요하면 넣어서 하면 되지 않을까. 법률에는 빼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 수정안을 받아들입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유대운 위원 의견 있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유대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대운 위원 유대운 위원인데요.

자전거도로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전으로 판단되고요. 현장 실태 조사 및 또 일반 자전거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안전을 보류한 후에 추후에 재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일단 유대운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고요.

김민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기 위원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볼 거냐 레저로 볼 거냐 이런 개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지금 이걸 배터리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서 수정 의견도 보면 25km 되는데 이게 상당한 속도입니다, 이 정도여도. 그리고 무게도 대단히 중량이 나가게 되는데, 이걸 정말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기자전거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도조차도 지금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이 법이 통과되면 전기자전거가 예를 들어 25km라고 정의되어 있지만 50km 가는 것도 나올 수 있지요, 기계적 손질만 하면. 저는 이거 아직은 좀 빠르다, 이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보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이 법안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담당자님 와 계세요?

○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국장 심보균 예, 지역발전정책국장 심보균입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이 안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이해하시죠?

○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국장 심보균 예.

○소위원장 황영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국장 심보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도로에 일반 자전거가 다니고 또 전기자전거가 다닐 경우에 전기자전거는 이제 배터리에 의해서 동력에 의해서 더 힘이 가해져서 더 많은 속도와 또 차체 중량에 따라서 충돌시의 그런 위험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기자전거가 선진국에서도 일반화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전기자전거가 일반 자전거도로에서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속도와 차체 중량을 최대한 제한하고자 업계 의견도 수렴을 하고 자전거 동호인들 단체의 의견 수렴을 해서 적정한 기준을 저희들이 시속 25km, 차체 중량 30kg로 제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수정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그런 염려를 다 고려해서 기준을 정하신 거다?

○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국장 심보균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러면 지금 시속 25km고 30kg의 중량, 우리나라에 자전거도로가 잘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자전거 1대 다니기 어려운 곳도 자전거도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는 다 그렇게 되어 있는 데 많습니다. 이것 대단히……

도로로 치면 고속도로가 있는가 하면 국도, 농로가 있듯이 자전거도로는 정말 잘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자전거도로 하나로 지금 ‘자전거도로’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급수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런 것이 고속으로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를 동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굳이 25km와 30kg이라는 것을 정한 근거라든지 실험이라든지 시험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충돌이라든지……

○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국장 심보균 자전거 안전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 산하의 기술표준원에서 속도와 차체 중량 그런 기준을 정했고요, 기술적인 것은 저희들이 25km나 30kg 정한 것은, 일반 자전거의 속도는 보통 일반 분들이 타실 때 일반 자전거는 한 15km고요. 20km 정도도 보통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했구요.

차체 중량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지금 배터리 기술이 발전을 해서, 과거의 납산 자전거 같은 것은, 지금 중국 같은 데서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40kg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무게를 좀 줄일 수 있는, 현재 우리나라 국내 산업의 기술 수준 감안했고, 또 속도도 일반인들이 15km지만 조금만 몇 달 정도 속달되면 한 20km 정도 내외로 타기 때문에 25km 정도 하면, 최고 속도가 25km 이내기 때문에 25km가 되면 자동으로 동력이 차단되도록 설계를 하도록 그런 기준을 뒀기 때문에……

○김민기 위원 또 하나 질의를 할게요.

지금 배터리 자전거가 자전거도로에 다니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국장 심보균 지금 다니고 있다면 그것은 현재 법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고요.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기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지금 다니고 있으면서 불편해서 이게 올라온 것 같진 않구요. 이게 지금 자전거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 맞죠?

○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국장 심보균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자전거산업의 활성화도 있고, 둘째로 노인이나 장애인, 노약자들의 경우에는 폐달을 굴릴 힘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 전기자전거를 이용해서 일반 자전거와 같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편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유대운 위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기술표준원의 실험이라든가 연구 결과, 모든 공산품은 기술표준원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국장 심보균** 예, 그렇습니다.

○**유대운 위원** 얼마만큼 실험을 했는지는 여기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 제가 우려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 찬성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사고 나는 것을 나는 여러 번 봤습니다. 사망자도 봤습니다. 그리고 25km 미만이라고 속도 제한 이러는데, 차단기를 얼마든지 우리나라 이상한 기술자들이 다 풀어냅니다. 그래서 이게 담보가 안 되니까…… 다만, 기술표준원의 제품과장이라도 불러서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이 법안을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호 위원** 전동휠체어는 무게가 얼마나 나가고 속도가 얼마나 나갑니까? 그래야 감이 좀 비교가 되는데.

○**유대운 위원** 그거 많이 나가 봐야 한 10km?

○**소위원장 황영철**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과 민주통합당의 강창일 의원님이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이 안을 내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어떨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실태라든가 또 혹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실제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 저희들이 직접 좀더 면밀하게 현장에서 관찰하는 그런 것도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 꼭 부정적인 것보다는 저희들이 좀더 실물적으로 사안들을 파악해 보자는 의미에서 그런 시간을 나중에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계류시키고요. 다음에 더 논의하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런 거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니까 저희들이 한번 직접 나가 보죠.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소위에서 추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6. 노동조합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15시07분)

○**소위원장 황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노동조합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잠깐만요. 의사 진행을 하기 전에 제가 부탁 말씀을 좀 우리 사무처 행정실에다 말씀을 드리는데, 본 안건 심의와 관련해 가지고 관련 단체에 계신 분들이 바로 저희 소회의실 바깥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일단 가까운 곳에서 다른 곳으로 좀 가시게끔 협조 요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의사일정 결과 따라서 행어나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해 주세요.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영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노동조합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적용 대상 공무원은 먼저 해직공무원과 징계처분의 취소나 기록말소대상 공무원입니다.

‘해직공무원’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그리고 징계처분의 취소나 기록말소대상 공무원도 다음 각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1호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과 관련하여 해직된 경우, 2호는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된 활동으로 인해서 해직된 경우, 그밖에 1호나 2호와 유사한 사유로 해직된 경우입니다. 참고로 02년 3월 23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해직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직공무원의 특별채용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직공무원 또는 징계처분의 취소와 기록말소대상 공무원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설치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관, 위원 수는 위원장 포함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직공무원 등의 판정신청과 심의 및 결정, 먼저 해직공무원 등의 판정신청은 해직공무원 또는 징계처분의 취소나 기록말소 대상 공무원으로 판정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고 심의와 결정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여부를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특별채용 그리고 징계처분의 취소와 기록말소 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채용 등의 신청은 공무원으로 다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해직공무원이나 징계처분의 취소나 기록을 말소시키려는 공무원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서 소속 기관, 해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직 시에 소속하였던 기관의 임용권자에게 특별채용 또는 징계처분의 취소나 기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6개월 이내에 특별채용 또는 징계처분의 취소나 기록말소를 하여야 하고 특별채용은 해직 시에 재직하던 직급으로 해직 기간 동안의 호봉 증가분을 인정해서 특별채용하여야 하고 해직 당시의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위원회가 해직 당시 소속 부서 및 직무를 고려해서 특별채용할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시에 나온 의견으로는 이들 해직은 지금 합법화된 공무원노조 활동에 따른 것으로 상당 기간이 지난 지금은 국민 화합 차원에서 복직특별법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무원노조 활동이 합법화된 현 상황에서는 노조 관련 활동이 불법적으로 여겨졌던 시기에 노조 관련 활동을 이유로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복권이 공식사회의 통합, 나아가서 국민 화합의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내용이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 활동을 비롯한 공무원의 단체행동은 실정법 내에서만 합법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고 실정법 테두리를 벗어난 공무원의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또한

해당자들에 대한 복권 시에는 공무원노조 활동이 아닌 다른 사유에 의해 징계를 받은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법안의 입법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 활동 등에 대한 과거의 해직 등의 조치가 잘못된 것이라는 국민적 차원의 공감 또는 합의에 대한 확인, 당시 해직자들의 복직이 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 및 공직 기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 등을 고려해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검토보고 끝나셨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예.

○소위원장 황영철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제2차관 이삼걸 수석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정부로서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이 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한 129명 정도 되는데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징계처분한 사람 한 2962명 중에 해직 처분 받은 사람이 506명이었습니다. 이 506명 중에 소청이라고 소송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377명은 사실이 되고 남은 사람이 129명인데 이 129명에 대한 행위 부분은 지금 현행법으로 봐도 중징계 처분 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 다시 재채용되게 되면 현재 사법 질서가 문제되고 징계체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정부로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의견에, 공무원노조라는 게 결성의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노조가 만들어지게 된 사회적 배경이 있고 이분들이 활동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제2차관 이삼걸 예.

○김현 위원 공무원 사회의 부정부패를 좀 없애자거나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무원노조가 결성된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제2차관 이삼걸 예.

○김현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다른 연유로 징계를 받거나 이런 분들하고 좀 구분을 해주어야 되는 거지요. 공무원노조를 결성하다가 징계를 받아서 불이익을 받게 된 분들에 대해서는요.

그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전에 이명박 정부에서 반대가 심해서 처리가 안 되었고 지난번에도 이게 다시 처리가 안 되어서 오늘 또 토론에 올라온 건데 실제로 이분들이 각기 말씀하시는 129명의 범죄가, 정부 측에서 생각하는 게 이분들이 복직이 되었을 때 공무원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나요? 형평이라는 것을 얘기하시면 안 되요. 이분들이 해직되었던 요인들은 다른 요인들과 다른 이유로 해직이 된 거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제2차관 이삼걸** 저는 큰 파급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담당국장인데 국장이 한번 설명 좀……

○**행정안전부인사정책관 김동극**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노조 결성과 관련되어 갖고 해직을 당한 거니까 좀 선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과거의 전교조하고는 좀 다른 게 03년 6월에 공무원노조법이 입법예고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때 입법예고된 공무원노조법은 지금 현재 공무원노조법하고 사실상 같은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04년 10월에 국회에 이미 제출되었고요. 이미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노조권을 인정해 주기로 정부가 방침을 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 갖고 그 안이 부족하다고 그래 갖고 단체행동권을 달라고, 지금도 단체행동권은 허용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걸 허용해 달라고 총파업을 했던 겁니다. 총파업을 해 가지고 그때 해직된 사람이, 지금 129명의 대부분이 그때 파업 때문에 해직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직된 분들이 과거에 민주화라든지 노조 합법화를 위한 투쟁 때문에 해직되었다고 보기는 저희들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파면이나 해임된 사람들을 특별법에 의해 갖고 무조건 정부에 채용을 해 준 사례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선례가 되는데 앞으로 징계권 행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그 판단을 하니까 이거 하지 말자는 것인데 실제로 지금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과 동의 의원의 규모를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인사정책관 김동극** 예?

○**김현 위원** 규모를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인사정책관 김동극** 예.

○**김현 위원** 국회의원 과반 이상이 지금 서명을 했는데……

○**행정안전부인사정책관 김동극** 아니, 저희 정부 의견은 그렇다는 뜻입니다.

○**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 있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일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처리를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을 실제로 지금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돼서 대통합과 화합을 이루자라는 박근혜 당선인의 얘기도 있었고 이 부분은 후보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거는 이번에 처리를 해야 되고 더 이상…… 그러니까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이거를 처리를 안 한다 이런 것도 좀 지나친 기우인 거고요. 오랫동안 해직 상태로 있는 분들이 겪었을 그런 고통이나 이런 걸 감안한다면…… 그게 뭐 아주 많은 인원도 아니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복권에 대한 특별법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153명입니다. 원직 복직에 대해서 동의 서명을 한 국회의원이 여당에 24명, 야당에 129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국회의원들의 그런 요구조건 역시도 받아들여 주는 게 법안심사소위에서 검토할 때의 귀중한 하나의 기준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수위원회에서 공무원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니만큼 이 법안이 통과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金永柱 委員**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이지요. 내용에 보면 “특별채용 등 신청” 해 가지고 해직기간 동안의 호봉 증가분을 인정하여서 특별채용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왜냐하면 공무원이라고 또 특별히 예우를 받아야 된다는 건 없고 말이지요. 사회에도 이런 현상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회사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해고된 거나 정부에 그렇게 하는 거나 똑같은 것인데 어떻게 다른 거는 모르지만 해직기간 동안의 호봉 증가분을 그대로 인정한다 이러면 죄책감이나 책임감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사면되고 나서 5년이 지나서 한다든지 3년이 지나서 특별채용을 한다 하는 이런 부분이 삽입이 돼야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는데요.

○**행정안전부인사정책관 김동극** 제가 위원님 말

씀하신 대로 과거에 예를 들어서 1980년도에 강제 해직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특별법을 통해 그분들을 구제해 줬었는데 해직자를 복직시키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해직기간 동안의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 준 사례는 전혀 없었고요. 그전에 전교조 해직자들 복직시켰을 때도, 그때도 해직된 기간을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해 준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그런 사항은 저희도 안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장래에 일어날 걸 걱정해 갖고 정부가 반대한다는데 그런 취지는 아니고 지금까지 어떤 특별법이 만들어졌더라도 정상적인 사법 절차, 그러니까 공무원 징계 절차라든지 사법 절차를 통해 갖고 면직된 사람을 복직시켜 준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특별법 통해 갖고 공무원 징계자를 다시 복직을 시키면 공직 사회의 공직 기강 확립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대운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토론에는 “이들의 해직은 지금은 합법화된 공무원노조 활동에 따른 것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지금은 국민화합 차원에서 복직 특별법 마련 필요”, 검토의견을 보면 대체토론과 비슷하게 다 나왔는데 마지막에 이런 조문이 나옵니다. “공무원노조 활동이 아닌 다른 사유에 의해 징계를 받은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기서 다른 사람이라 하면 복무 기강 또는 뇌물수수 이런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여기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게 이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될 경우 구제될 대상자가 몇 명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인사정책관 김동극 129명입니다.

○유대운 위원 129명입니까?

○행정안전부인사정책관 김동극 예.

○유대운 위원 129명 중 여기서 노동조합법 39조1항에서부터 5항을 위반한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이게 부당노동행위 법이거든요.

○행정안전부인사정책관 김동극 그 대부분이 총파업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하고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집단행위를 할 수가 없고요. 법체계가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때 결근을 하면서 총파업했다

그래 갖고……

○유대운 위원 그게 이런 거거든요. 공무원은 집단행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지만 그거를 비켜 나갈 수 있는 법률이 바로 노동조합법 39조 1항에서부터 5항입니다. 그러니까 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하거나 이런 행위를 할 때 그 노조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또는 복무 기강이라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부분의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의 해당자들이 129명 중 몇 명 정도로 되느냐……

○행정안전부인사정책관 김동극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노조법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이지마는 현행 공무원노조법에 의하더라도 이분들은 징계 대상입니다. 지금 현행……

○유대운 위원 잠깐만요. 03년에 노조 활동하고 04년 이후에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돼서 사실상 03년도에 이분들이 활동했던 그 법체계와 전체적으로 볼 때 거의 유사하게 법률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인사정책관 김동극 예, 그렇습니다.

○유대운 위원 그럼 이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해직된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안전부인사정책관 김동극 그건 몇 명 없습니다.

○유대운 위원 몇 명입니까?

○행정안전부인사정책관 김동극 20명 정도 됩니다.

○유대운 위원 많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바로.

이 부분은 전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노동조합법 39조 여기에다 근로기준법 12조2항, 거기에다 노사협의회법, 이 세 가지를 몽땅그려서 징계를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대체적으로. 맞지요?

○행정안전부인사정책관 김동극 그런데 지금 그……

○유대운 위원 노동조합법 39조를 잘 압니까?

○행정안전부인사정책관 김동극 제가 그 노동조합법 39조……

○유대운 위원 안 보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행정안전부인사정책관 김동극 아니, 그런데 위원님 이 129명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해직자는 총파업에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공무원노조법이라는 게 있지도 않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하고 복무규

정을 위배해 갖고 해직된 거고요. 만약에 이분들이 공무원노조법이 만들어졌고 지금 현 상태에 만약에 그런 행위를 했더라도 당연히 공무원노조법하고 국가공무원법하고 복무규정에 의해 갖고 파면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법이 합법화되고 그 뒤에 대부분의 해직자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시국선언 때 시국선언에 참여해서 파면·해임된 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노조 활동에 직접……

○**김현 위원** 그때 시국선언의 내용이 뭐였지요?

○**행정안전부인사정책관 김동극** 그때 제가 뭐……

○**김현 위원** 쇠고기 수입 반대 그거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인사정책관 김동극** 그런데 어쨌든간에 법치국가에서는, 대법원까지 가 갖고 이미 그분들이 죄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운 위원** 노조 설립 이후에도 이 법률과 관계없이 대법원 판례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 말씀이신가요?

○**행정안전부인사정책관 김동극** 유죄 판결이라기보다 파면하고 해임이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대운 위원** 유죄 판결이지요. 최종 확인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접근성에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

○**소위원장 황영철** 그거는 말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죄 판결과는 다르니까.

○**유대운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논쟁이 많은 거리라서……

○**소위원장 황영철** 유죄 판결은 아니고 그 무효 소송에 대해서 각하가 된 거지요?

○**행정안전부인사정책관 김동극** 예, 그렇습니다.

○**유대운 위원** 어쨌든 최고법원에서 행안부의 손을 들어준 거지요, 법원은. 그게 그 얘기인데요.

결과적으로 두 가지 시각에서 본다면, 첫째 국민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분들이라면 그 의무를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가다 보면 궤도를 벗어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일면이고요. 상당수 면은 지금 공무원노조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6급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 것 맞지요?

○**행정안전부인사정책관 김동극** 예, 그렇습니다.

○**유대운 위원**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성실성 또 못쳐서 의견을 같이 전달해서 많은 처우 개선들을 하려고 하는 좋은 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 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거나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실래요?

○**행정안전부인사정책관 김동극** 저희들도, 정부에서도 공무원노조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차관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때 징계된 2000 몇백 명 중에 대부분은 경징계였습니다. 단순 가담자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수한 뜻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경징계 처리를 했었고요. 그중에 중징계, 파면·해임된 사람들은 506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또 정부에서 소청을 거쳐서 한 100여 명이 구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법원에서 또한 삼백 몇 명이 구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은 129명은……

○**유대운 위원** 남은 안전을 심의하려면, 위원님들 시간도 없고 그런데 많은 시간 뺏을 수 없지요.

두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아마 129명의 해고 사유 또 징계위원회 속기록, 징계위원회 참석자 수 다 있을 겁니다. 전산화 돼 있을 거고. 이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사안별로 아마 진부 다 조사가 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인사정책관 김동극** 예, 알겠습니다.

○**유대운 위원** 여기서 제 의견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지금 보면요 129명이 아니라 137명으로 돼 있고요.

○**행정안전부인사정책관 김동극** 아니요, 그 뒤에 또 법원에서 구제된 분들이 있어 갖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29명이고 그중에 5명은 아직까지 소가 진행 중이고요.

○**김현 위원** 그러니까 137명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인사정책관 김동극** 124명은 이미 법원에서도 끝났습니다.

○**김현 위원**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듣기에는 중죄라고 그래야 되나요? 엄히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자꾸 들려요, 말씀하시는 게. 그런데

지금 징계받아서 해고된 분들이 보면 2006년 이전에, 그러니까 노조법 제정 과정에서 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공직에서 해제되고 이런 분들이 2006년 이전에 해고된 분들이 113명이고 전체의 82%고요. 그다음에 소위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해고되신 분들은 지금 그다지 많지가 않지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적인, 정부 정책에 대한 단순 의사표시, 아까 20여 명의 해고자지요. 그런데다가 이분들이 대부분 고령이고, 55세 이상이 열여섯 분이고 50세 이상이 46명이고 45세 이상이 48명, 40세 이상이 25명, 그러니까 40대에서 50대 중반까지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공무원의 처지로서, 물론 잘못해서 해고가 됐다 또는 그 사람들이 정당한 요구를 하다가 잘렸다 하더라도 같은 공무원이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향후에 무슨 일을 또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형평성에 대한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이걸 대단히 좀 부적합한 검토의견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유대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사유에 의해 징계를 받은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 이 검토의견은 적절하지가 않지요. 이거는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공무원노조 활동을 하면서 해직된 분들과…… 그러면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잘못된 분들이 다시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되거나 그래서 국가로부터 배상·보상 판결이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사건 하나하나를 다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공무원의 그런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고생하신 분들이예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앞장섰던 분들인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다른 사유와의 형평성 이 얘기는 안 맞는 거고.

그다음에 면밀한 심사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공직 기강에 미치는 영향 등 면밀한 심사를 안 하셨다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미 하였고. 수차례에 걸쳐서, 이분들이 한두 해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10년 넘게 해고된 상태로 유지가 돼 왔고 이거를 복직시켜 달라고 복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고통을 겪고 있고 피폐해진, 가족관계까지 파탄 날 지경이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인원, 그러니

까 이게 향후에 일어날 일들 때문에 이거를 안 한다 이거는 저는 안 맞는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화합, 그것보다 더한 분들도 지금 특별사면을 하는 정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金永柱 委員** 이거는 굉장히 현안 문제고 한데 그동안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역대 어떤 예가 있을 거 아니예요? 아까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이것만 특별히 갈 수는 없다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최고로 양보를 해서 앞의 기준을 제시하고, 통과되더라도 앞의 기준을 제시해서 앞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정도로 해서 대안을, 정부안을 제출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예요?

○**행정안전부인사정책관 김동극** 지난 국회부터 계속돼 왔던 사항인데요. 저희는 그런 대안도 마땅하게 검토할 안이 없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분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인사를 오래 해 갖고 해직된 분들 전부 다 개인적으로는 친한 사이이고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사석에서 만나면 친하게 하는 사이인데 그것은 개인적인 감정하고 공적인 일은 좀 다르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분들이 정부에서 공무원노조를 절대로 인정을 못 하겠다, 그리고 노조를 탄압하고 단체 결성을 탄압하고 이런 과정에서, 과거 전교조같이 그런 과정에서 총파업을 하고 무슨 행동을 했다 그러면 저는 고려의 여지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03년도에 이미 현재와 같은 공무원노조법이 입법 예고되고 04년 10월에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에서 총파업 들어간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노조 결성, 노조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파업을 했다고는 보기 힘들고요.

○**김현 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행정안전부인사정책관 김동극**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계속 장래에 발생하는 것을 걱정해서 반대한다 그러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국가에도 인사체계가 있고 기강이 서야 되는데 이런 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특별법으로 해결하면 장차 공직사회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김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취지로 지금 의견을 내신 거잖아요. 검토의견의 마지막 부분

이 그거잖아요. 공직기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등 면밀한 심사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 얘기하는 게……

이게 언제 발의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면밀한 심사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오냐고요.

○소위원장 황영철 면밀한 심사 작업은 우리보고 면밀한 심사를 하라는 것이니까, 저쪽의 얘기가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제2차관 이삼걸 그 검토의견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부분입니다.

○김민기 위원 문제는 개인적인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단체행동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인사정책관 김동극 예.

○김민기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것이 관례가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행정안전부인사정책관 김동극 예, 과연 해임된 사람을 법에 의해서 일괄 복직해 준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공직 기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별법으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153명의 의원님들이 동의를 할 정도면 이러한 사안이 또 있다고 그러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153명이라는 의원님들이 서명할 정도의 사안이 있다면 최초의 일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일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서명할 때 그것이 국회의원의 뜻이겠습니까? 그것 국민의 뜻이지요. 지금 이 상황에서 공직 기강의 문제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바꿔 말하면 공무원들이 인허가 비리라든지 뇌물 횡령 알선 이런 것으로 파면되었는데 이것을 특별히 복직시키자라고 국회의원한테 법안이 왔을 때 찍을 사람 있겠습니까? 동의해 줄 사람?

그렇지만 이것은 153명이라는 분이 동의를 했다는 얘기는 다른 논거를 다 덮을 수 있는 논거예요.

○행정안전부인사정책관 김동극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국회를 저거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정부의 의견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부 의견은 여러 가지 사법질서라든지 징계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할 때 특별법으로 이렇게 일괄해서 복직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김현 위원 그러니까 정부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국회에서 특별법을 냈고 여기 행안위 소속 의원만 하더라도 지금 열세 분이 동의를 했어요, 행안위 소속 의원님들이요. 여기 계신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의견만 계속 고집하고 강조하지 마시고, 국회가 왜 이 특별법을 제출했는지 하는 그런 정신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민기 위원 그리고 이 법 통과되면 전체 다 복직되는 게 아니잖아요. 심의위원회 설치해서 거기서 다시 거를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전향적으로 보셔야지요.

○소위원장 황영철 이제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실 분들은 다 주장이 되셨고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사정책관님도 사실 같이 있었던 동료 직원의 문제를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시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이런 특별법이 아닌 다른, 소위 말해서 대통합의 정신을 살리거나 이런 방식으로 다시 복직시켜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건 고민 안 해 보셨어요?

○행정안전부인사정책관 김동극 결국은 과거에 전교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교조는 특별법을 제정한 게 아니고 그냥 개별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특채를 다시 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분들은 법령을 정비할 안 하고는 특채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공무원 특채라는 것은 경력직 공무원에 나가서 다시 채용하는 것은 3년 이내에만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사관계 법령체계를 다 흔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교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공무원……

○소위원장 황영철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어요.

○행정안전부인사정책관 김동극 그런 취지로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특별채용 해 줬는데 이 경우는 그런 경우도 저희들 정부 판단으로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

같은 법안이 18대 국회에서 논의되다가 결국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가 19대 국회에 다시 이 법안에 대해서 첫 번째 논의거든요.

야당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이것을 가결시키기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표결 처리를 요구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행여 논의 자체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일단 좀 더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안에 대해서는 추후 더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金永柱 委員**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그러면 지금 인사정책관님께서 말씀드렸듯이 특별법이 아닌 또 다른 방법으로 이분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로 인해서 사실은 공직생활 정말 다시 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생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다시 공직에 복직할 수 있는 안은 없는지 좀 더 살펴봐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좀 더 논의를 하기 위해서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의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8.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박기춘 의원 발의)

9.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10.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11.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최재천 의원 대표발의)

12.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15시41분)

○**소위원장 황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11항까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과 제12항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등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승조 의원님, 박기춘 의원님, 그리고 윤상현 의원님, 백재현 의원님, 최재천 의원님,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김명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이 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건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지금 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모두 법률로 제정하자는 것이고요. 공휴일의 내용에 있어서 양승조 의원님은 어버이날을 추가하고 박기춘 의원님은 어버이날, 한글날을 공휴일에 추가하고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에 윤상현 의원님은 대체공휴일제만 도입하고 백재현 의원님께서 제헌절, 한글날을 공휴일에 추가하고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을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재천 의원님 안은 제헌절, 한글날,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추가하고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쪽에 김명연 의원님 안은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인데요. 국경일과 공휴일 규정을 통합해서 법률로 제정하자, 그리고 공휴일인 국경일은 현재 3개인데 제헌절과 한글날을 국경일로 추가해서 5개로 하고 그다음에 명절인 설날, 추석, 토요일인 경우에는 해당 주의 목요일을,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주의 화요일을 공휴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휴일 법제화에 대해서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으로서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측면과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 대한 비교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제 도입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휴일 수 보장을 통해서 국민의 휴식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과 휴일 수 증가로 인한 기업의 생산 차질, 또는 인건비 부담이라는 측면에 대한 비교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9쪽에 제헌절, 한글날, 어버이날 등의 공휴일 확대에 대해서는 해당 일이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일의 의미와 의의를 온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점은 있으나 마찬가지로 휴일 증가로 인한 기업의 생산 차질 등 경제적인 측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등 근로환경으로 인해서 선거권 행사가

어려운 계층의 선거권 행사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고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는 선진정치 문화 정착을 통해 국민의 정치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명연 의원님의 통합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경일은 기념 측면에서, 그리고 공휴일은 휴무 측면에 초점이 있고 양자가 별개 개념인 점을 볼 때 통합 법제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명절 추가 공휴일 지정에 대해서도 귀향 등 이동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취지는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제2차관 이삼걸 우선 공휴일을 법제화하자고 이렇게 정리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법률로 안하고 정부의 영으로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관공서에 관한 휴일 규정을 정해 놓고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일반 민간인들이 그것을 준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휴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을 법률화시켜 버리면 법률의 효과가 전 국민한테 다 미치기 때문에 조그마한 소기업체도 다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체적으로는 관공서 휴일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준용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것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상당히 우리나라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현행 법체계 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현행대로 관공서 휴무에 관한령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결국은 상당히 합리적인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많이 연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휴무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하고 같이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휴무일을 보면 우리나라 휴무일이 한 119일 정도이고 미국, 독일이 한 114일, 프랑스 115일, 물론 여기에는 또 대체휴일을 넣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적지 않은데 대체공휴일을 많이 넣으면 그만큼 생산활동

기간이 줄어든다고 하는 그 문제하고 계속 경제계의 문제하고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논의가 많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헌절, 한글날, 어버이날, 이 부분도 전부 하자고 얘기했는데 한글날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관공서 휴무일로 정했습니다, 한글날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아까 대체공휴일하고 마찬가지로 결국 휴무일 숫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은 취지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선거일의 유급휴일 지정하는 문제 이 부분은 관공서 규정에 정해져 가지고 공무원이 놀면 놀게 되는데 결국은 일반 국민들까지 영향을 미치자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상은 근로기준법에다가 넣는 것이 더 법체계상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경일하고 그다음에 공휴일을 하나로 같이 하자고 하는데 국경일은 기념할 값어치가 있다고 해서 정하는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공휴일은 노는 휴무 측면에서 맞춰져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합하는 것은 좀 체계가 맞지 않지 않느냐? 따로 두고도 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국경일은 전부 다 휴무일로 하자 이렇게 하면 같은 효과가 나는데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金永柱 委員 우리는 지금 현재 공휴일이 얼마입니까?

○행정안전부제2차관 이삼걸 119일입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됐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柱 委員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여기서 보면 최고 많이 공휴일 날짜로 늘면 5일 늘잖아요, 지정을 했을 적에.

○행정안전부제2차관 이삼걸 지정했을 때 늘 수 있는 것이요?

○金永柱 委員 예, 약 한 5일 정도, 지금 의원님 전체 다 하자고 하는 대로 하면……

○행정안전부제2차관 이삼걸 계속해서 5일 늘 수 있는……

○金永柱 委員 아니, 계속해서 말고 1년에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일수가 지금 며칠이예요? 오늘 여기 올라온 자체만 하면요.

○행정안전부윤리복무관 김석진 윤리복무관입니다.

다.

제헌절 한글날 어버이날 이렇게 3일하고요.

○**입법조사관 서덕교** 한글날은 빼셔야지요.

○**행정안전부윤리복무관 김석진** 그렇습니다. 대체공휴일제로 하면 한 이틀 정도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金永柱 委員** 그러니까 5일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제2차관 이삼걸** 예.

○**金永柱 委員** 이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지금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일수를 계산하면 노동생산력이 약 2% 떨어집니다, 이것ियो. 2%가 떨어지는데 중소기업이 이익 창출을 3% 하기 위해서 지금, 3%도 중소기업이 이익 창출만 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적자 아니면 3% 매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5일을 더 잡으면 2.03%가 떨어진다고, 1년에. 이것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안이 올라온다는 것은 국가를 전혀 생각 안 하는 사람의 이야기이다 이것입니다. 지금 2.39% 떨어져요, 보면 생산성이. 그러면 사업 되겠어요? 돌아나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황영철**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차관님께서도 두 가지 걱정을 하는 것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민감하니까 영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것이고, 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직장이 비교적 안정되고 고임금을 받는 직장은 대부분 토요일 다 쉬지요.

문제는 영세기업 쪽으로 가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중에 이런 부분은, 영세기업이 노동조합도 없지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근로기준법 들어가기 이전에 단체협약에 넣으면 더 좋는데 그런 여건들이 다 못 되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우리나라도 복지국가에 가는 길 대목에서 보자라는 법 취지는 십분 이해하지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 경제성장으로 볼 때 상당히 이 법률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대목에서 참 말이 길게 잘 안 나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단, 좋은 고견 좀 윤재옥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옥 위원** 보류하고 계속 심사하도록 하십

시다. 보니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알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더 말씀하실 것이 많으시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이 안을 가결시키기에는 좀 무리다 하는 데 동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의결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3.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14.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정신계승 보상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15.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설훈 의원 발의)

(15시53분)

○**소위원장 황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설훈 의원님은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리고 이진복 의원님은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정신계승 보상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단 목적으로서는 부마항쟁의 진상규명, 관련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그리고 실질적인 예우 및 보상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유족 범위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계비속·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소속으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예우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은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념사업 및 관련 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취업 시 채용시험에 가점 등 취업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쪽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13쪽의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입니다.

대체토론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으로는 제정안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 및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재평가와 관련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 및 후속조치의 필요성 차원에서 볼 때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마민주항쟁을 포함한 민주화운동 전반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화운동 보상법을 통해 명예회복 및 보상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 동 법에서 부마항쟁 관련자로 인정된 경우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도 직접 규정하고 있어서 현행 국가보훈체계에 다소 위배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제2차관 이삼걸 사실 부마항쟁을 포함해 가지고 민주화 과정에서 있었던 것은 다 저희들이 만든 민주화운동 보상법이 사실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해 가지고 부마항쟁 관계도 일부 회복을 시켜 주고 보상도 했는데 정책적으로 부마민주항쟁 사건만 떼어 가지고 별도의 법으로 하자는 것이 결정이 되면 별도의 법으로 하는 부분까지는 정책적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그래도 보상받는 수준 문제는 다른 법과의 형평성이 있으니까 형평성을 좀 고려해야 될 것 아니냐,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의한 수준하고 같이 되게 하는 것이,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법이 보면 명예회복 보상뿐만 아니라 민주유공자에 관한 법률안이 따로 있는데 지금 현재 소위 국가유공자라도 하자는 얘기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민주화 보상법 만들 때 민주화 보상법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에 대한 예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실제로 이것

은 보훈처와 관련이 없는데 보훈처 쪽에서 관련된 업무가 문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있어요.

그렇게 있으니까 여기의 내용 중에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문제는, 예우 문제는 이 법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 이 법하고 같이 균형을 맞추면 좋겠다, 별도로 분리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옥 위원 법안 제출한 의원 보좌관 와 있습니까? 아무도 안 왔어요?

상임위원을 굳이 3명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통상 이런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몇 명입니까? 행안부에 아시는 분 없나요?

○행정안전부제2차관 이삼걸 보통 상임위원은 1명이고 나머지 비상임입니다.

○윤재옥 위원 여기서 보통 정부의 이런 위원회가 상임위원을 1명으로 하는데……

○김현 위원 이것 보니까 부산 마산이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이렇게 들어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광주 한 지역이잖아요. 그런 것 같은데요?

○윤재옥 위원 그런데 지역의 어떤 대표를 상임위원으로 굳이……

○김현 위원 사건 자체가 부산 마산 경남 일대가 포함된 사건이니까 아마……

○윤재옥 위원 그래서 3인을 하는 거예요?

○김현 위원 제 추측컨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니까 뒤에 위원회 구성도 보면 부산광역시, 경남도지사, 그다음에 부산과 창원의 부마민주항쟁 관련단체 추천 4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하고 부마항쟁 자체가 특성이 여러 지역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제 추측컨대 그런 것 같아요.

○윤재옥 위원 그래서 제 사건으로는 상임위원은 일종의 공무원 아십니까?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제2차관 이삼걸 예.

○윤재옥 위원 어떤 직급으로, 1급으로 할지 차관급으로 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명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 지역별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상임위원은 1명으로 해 가지고 상근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들

을 지역별로 이렇게 골고루 안배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항별로 되어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정부 측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의 의결에 대한 위원님들의 입장이 어떤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정부 측하고 논의하거나 아니면 발의하신 의원님들하고 논의가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은 추후로 정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현 위원** 저는 여기 검토의견에 긴급조치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법과 병합심사, 그다음에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하고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부마민주항쟁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하자는 것인데 긴급조치 민주유공자 예우는 좀 다르지요?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오진영** 보훈처 보상정책국장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교에 쓰여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당선인께서 후보자 시절 때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긴급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하고, 또 부산 마산 민주항쟁에 관해서도 진상규명이 미진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신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산 마산 민주항쟁 특별법 내용 중에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부분을 한꺼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마산 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만 되면 따로 어떤 보훈처의 심사가 없어도 민주유공자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문병호 의원이 따로 내놓으신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하고 연계해서 같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검토의견을 전문위원께서 내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윤재옥 위원** 그것은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 그 쪽하고 맞춰 달라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김현 위원** 그것은 취지는 맞는 것 같아요.

○**윤재옥 위원**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여야에서 같이 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돼서 유족들이나 피해자들한테 적절한 대우가 있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아마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 또 상대적으로 광주민주화항쟁 보상 관련하고의 비교라든지 균형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김현 위원** 예.

○**소위원장 황영철** 지금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생각을 제가 제대로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법안의 통과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위원회의 설치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예우와 관련된 문제 등등이 다른 법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함께 고려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나오신 분이.....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오진영** 국가보훈처의 보상정책국장입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보상정책국장님.

그런데 법안과 관련되어서는 행안부에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행정안전부제2차관 이삼걸** 행안부는 저희들 어차피 행정국에서 합니다. 행정국에서 저희들 검토해 가지고.....

○**소위원장 황영철** 그래요? 그러면 두 분이서 함께 검토를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어쨌든 이것을 같이 병합 심의를 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되니까 대안을 하나 만들어 오세요.

○**행정안전부제2차관 이삼걸** 예.

○**소위원장 황영철** 이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시고 해서 대안을 만들어 오시면 저희가 이번 회기 내에 그 대안을 가지고 심의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오진영**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훈처 인수위 업무보고가 지난 1월 13일 날 있었는데 부산 마산 민주항쟁의 진상규명

과 명예회복에 관한 부분은 진행시키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보고했고, 다만 국가유공자로 예우에 관한 부분은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보다는 분리해서 가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을 정부 측 의견과 다 종합해서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하고 합리적인 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입장도 고려해서 만들어 오시라는 얘기예요.

저희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이번 회기 때 있는데 설도 있고 그러니까 2월 14일까지 이 법안을 꼭 완성시켜서 만들어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오진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제2차관 이삼걸 노력하면 안 되고 해야지요.

○소위원장 황영철 그렇게 안 하시면 저희들 법안 통과 저희들이 만들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무리 없이 가장 합리적으로 안을 받고 싶은 것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성과 의결에 대해서 다 공감하십니까라는 정리된 법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이것을 오늘은 의결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6.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상직 의원 대표발의)

17.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유정복 의원 대표발의)

(16시06분)

○소위원장 황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이상직 의원님하고 유정복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하신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능인의 경제활동 지원 책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직 의원님 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능인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보 및 교육 제공 등의 종합적인 지원 책무를 부과하고 있고, 유정복 의원님 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15쪽입니다.

직능단체연합회의 업무수행에 대한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입니다.

이상직 의원님 안은 직능단체연합회 활동비용 지원입니다. 직능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유정복 의원님 안은 직능인의 의식개혁 및 신지식인·신기술인 양성을 위한 교육 연수, 그리고 직능인에 대한 정보제공, 직능인의 경제활동 현황 및 실태조사 등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쪽입니다.

직능단체연합회에 대한 국공유재산 특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직 의원님 안은 직능단체연합회의 국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대부·양여·사용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유정복 의원님 안은 직능단체연합회의 국공유재산 중 행정재산 무상 사용·수익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능단체연합회의 국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무상 대부 그리고 양여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다시 14쪽입니다.

직능인은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전문 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광범위한 여러 직종의 직업인들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나 시책 수립·시행 그리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5쪽이 되겠습니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231개 직능별 경제·비경제 단체로 구성된 사단법인으로서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공동이익 증진 등을 위해서 활동하는 민간의 이익단체입니다.

따라서 연합회의 구성원이나 소속 단체의 회비 납부 등을 통해서 동 연합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등의 특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보면 ‘국유재산 특례는 국유재산법 및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능단체연합회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체계상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이제 정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제2차관 이삼걸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직능인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1개 단체가 다 포함되는 아주 포괄적인 것이 직능인입니다.

그래서 직능인의 범위가 포괄적인데 포괄적인 범위에 대해서 행·재정 지원 방안을 만드는 것은 법체계상 조금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법’ 해 가지고 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해당 되면 지원을 해 주고 각급 분야별로 필요하면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또 우리가 법을 집행하기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구요.

두 번째, 운영비 부분에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회원단체의 회비라든가 분담금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 저희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민간단체가 있더라도 그 민간단체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서 민간에 경상적 경비를 못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정신을 보더라도 조금 법에 반영이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특례인데 국

유재산이나 공유재산 자체도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 법이 개별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야 되지 전체를 넣어 가지고 법에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합니다. 저희 의견을 다 해 봤고 공유재산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인데 양자 공히 이런 부분도 개별적으로 나중에 필요하면 요건을 넣어야 되지 여기 직능인에 넣어서 하는 것은 조금 체계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金永柱 委員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위원님들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 위원 딱 한 가지만요.

만약에 이 법이 제정되면 예산 수반사항이 있을 텐데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안전부제2차관 이삼걸 예산을 못 해 봤는데요,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김민기 위원 저도 계산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요.

○행정안전부제2차관 이삼걸 이 부분이 하게 되면 이 법을 집행하기도 어려운 것이 예산 지원해서 던지면 전부 다 그 자체에서 예산 수립이 안 돼요. 이게 불명확하고 의제한 거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법체계가 실현성이 없지 않느냐……

○유대운 위원 돈 있어서 전달한다 하더라도 회계 관리가 어렵고……

○행정안전부제2차관 이삼걸 예, 회계 관리가 어렵고, 또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정산 받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김민기 위원 그러니까 예산 수반사항에 대한 추계조차 되지 않는다고……

○행정안전부제2차관 이삼걸 추계를 어떤 분야, 어떤 요건에 쥐 가지고 얼마 정도 하면 계산을 죽 하면 나오는데……

○김민기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분위기도 산만해지고 그래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소위원장대리 유대운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의원 대표발의)

○소위원장대리 유대운 의사일정 제18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최경환 의원께서 발의하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내용은 택시 상부 표시등에 수정액정 표시장치 광고판을 설치하자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법체계상 개별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택시만 법률에서 규정할 경우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측면에서도 LCD 불빛에 의해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해서 안전운전 또는 운전자의 전방주시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유대운 정부를 대표해서 행안부 차관님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제2차관 이삼걸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교통안전 때문에 저희들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찰청이라든가 자동차를 관리하는 국토해양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나라의 예도, 이런 것 설치해줬다가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유대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간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쟁점 사안의 하나로서 보류하고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해서 계속 심사하는 안건으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

(16시41분)

○소위원장대리 유대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희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내용은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공사비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자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반환공여구역을 지자체가 도로·공원·공공문화 체육시설로 조성할 경우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를 추가해서 국비에서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장기간 불이익을 감수해 온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가재정 규모 등을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유대운 정부를 대표해서 차관님, 정부 측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제2차관 이삼걸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이 부분은 정부에서 특히 기재부에서, 국비를 우리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논의를 거쳐 가지고 했는데 그 당년도 국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현행법에 보면 도로하고 공원의 부지 매입하는데만 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일부, 60% 정도됩니다만 그것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세 법안은, 개정안은 대상도 공공문화 체육시설을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부지매입비가 아니라 공사비도 주자 그런 내용인데 제가 기재부하고도 얘기했지만 기재부도 전혀 수용이 어렵다,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그리하면 결

국은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건데 자치단체 간 사업에 이렇게 돈을 많이 줄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저희들 정부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유대운 의사일정 19항 본 안건 역시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보류해서 계속 심사하는 것이 어떠냐를 놓고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보류해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이전에 먼저 정회해서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보류해서 계속 심사하는 안건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19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류해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소위원장직무대리로 2건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곧바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황영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찰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중 의원 대표발의)

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소위원장 황영철 의사일정 제20항, 제21항 및 제22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주 전문위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 의원님, 홍문중 의원님, 강창일 의원님 세 분이 각각 대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선 개정안 주요내용을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김태원 의원님이 제출하신 안에는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가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홍문중 의원님 안은 그 내용에다가 추가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일정한 기준의 전기자전거를 제외하고,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출력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창일 의원님 안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일정한 기준의 전기자전거를 제외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릴 게 아까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실 때 네 번째, 다섯 번째 오는 안건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의결한다는 전제하에 홍문중 의원님하고 강창일 의원님이 제출하신 법안이 여기 저희 안건으로 지금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 내용은 자전거 활성화법 통과를 전제로 들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이후에 다시 심사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그래서 자전거와 관련된 부분을 빼고 오늘 심사를 하신다면 첫 번째, 자료 2페이지입니다, 무인단속 대상에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를 추가하는 내용이 김태원 의원님하고 홍문중 의원님이 같이 제출하셨는데 그 내용은 현행은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고 무인단속 대상에 교차로 꼬리물기하고 끼어들기를 추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교통체증을 완화시키고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법질서 준수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이고요.

현재 이 관련된 단속장비들이 성능테스트를…… 다른 단속장비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경찰청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그러면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김정석 경찰청 차장입니다.

경찰청 의견도 전문위원 의견과 같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자,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법안은 앞서 행정안전부 논의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논의는 위원님들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이것 행위를 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거예요, 아니면 운전자에게 하는 거예요?

○경찰청차장 김정석 원칙적으로 과태료 처분이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소유자에게?

○경찰청차장 김정석 예.

○윤재옥 위원 지금 무인단속 대상 불법행위가 어떤 게 있지요? 꼬리물기, 끼어들기 이 두 가지 말고 다른 게 어떤 게 있나요?

○경찰청차장 김정석 다른 게 주정차 위반, 과속, 신호위반 등 해서 한 일곱 가지 정도를 과태료 부과 가능 항목으로 동법에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이것은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도 그렇고 주무 기관에서도 그런 생각이니까…… 사실 꼬리물기하고 끼어들기가 교통법규·질서 준수의를 상당히 흐리게 하는 아주 악성 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과태료 항목으로 추가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김민기 위원 꼬리물기 지금 어떻게 단속이 돼요, 카메라에? 지금도 단속이 되지요?

○경찰청차장 김정석 예.

○김민기 위원 신호 위반이 된 것이니까요.

○경찰청차장 김정석 예, 지금 단속은 하는데 그게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을 해서 하는 경우는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지금 교차로에 신호단속카메라 CCTV 있잖아요. 그게 무인 단속카메라잖아요. 지금 꼬리물기로 들어가면 카메라에 안 찍혀요?

○경찰청차장 김정석 예, 신호위반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단속이 안 됩니다.

○김민기 위원 왜 안 시켜요?

○경찰청교통관리관 최경식 카메라 성능이 그냥 과속하고 신호위반만 다기능카메라에 되어 있고 꼬리물기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달리 운영을 해야지 됩니다.

○김민기 위원 아니요, 꼬리물기를 하면 결국은 신호위반에 걸리는 것 아니에요?

○경찰청차장 김정석 지금 꼬리물기와 같은 형태의 신호위반은 기계가 그것을 못 잡아내고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왜 못 잡지요?

○경찰청차장 김정석 그래서 그것을 기계적

인……

○김민기 위원 그러니까 기계가 천천히 가는 것을 못 찍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밑에 감지선이 있지 않습니까? 감지선을 지나갈 때, 지금 빨간 불에 감지선이 지나가면 찍히는 것 아니에요?

○경찰청차장 김정석 지금은 그게 기계적으로 신호위반이 아니다 그것만 잡히지 이게 꼬리를 물고 차가 서행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꼬리물기다 끼어들기다 하는 그것을 기계가 못 잡아냈기 때문에, 그것은 기계적인 설명을……

○소위원장 황영철 설명하실 때 그냥 못 잡아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이런 차에 위원님들한테……

○경찰청교통관리관 최경식 경찰청 교통관리관 최경식 경무관입니다.

신호위반이라는 것은 교차로에서 꼬리 물 적에 파란불일 때 이게 들어갑니다. 그때 꼬리물기로 들어가면 신호위반으로 안 잡힙니다. 빨간불일 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카메라를 달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지 됩니다.

○김민기 위원 자, 보세요. 감지선이 끝에 있지 않고 진입부에 있지요, 감지선이요? 감지선을 갖고 찍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교통관리관 최경식 감지선이 아니지요.

○김민기 위원 그러면 이 CC 카메라를 전부 다 분석해서 지금 끼어들기도, 끼어들기를 어떤 식으로 판정을 내립니까, CC 카메라는?

○경찰청차장 김정석 지금 끼어들기가 약간 수동적인 상황하고 자동적인 상황이 병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일정 구간에, 그게 교차로 같은데 정체시간대에 정체가 시작되는 그런 현상이 있으면 그때부터 카메라를, 꼬리물거나 끼어들기 그 상황을 그때부터 육안으로 봐서, 이게 어느 정도 차가 정체가 되고 끼어들기 꼬리물기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 기계적인 관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김민기 위원 그러면 기계적인 관찰이라는 얘기는 상황실에서 그것을 보면서 한다는 겁니까?

○경찰청차장 김정석 CCTV로 다 전송이 되면 거기에 차가 10대가 있으면 번호들이 전부 다 체크가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순서가 어떤 차가 중간에 끼어든다든지 그러면 그 차가 끼어들기 차량으로 그런 식으로 판독을 하는 거지요.

○김민기 위원 예를 들면 끼어들기가 교차로 안

에서의 끼어들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감지선을 갖고 기계식 혹은 전자식으로 사람이 평가하지 않고 그렇다면 저는 이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것을 분명히 사람이 상황실에 앉아서 혹은 그 카메라를 보면서 정해야 될 입장이고 그렇게 되면 이것은 대단히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교차로에 나가 있는 경찰관이 할 수는 있지요?

○경찰청차장 김정석 예.

○김민기 위원 그런데 그것을 카메라로 보고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차장 김정석 예, 카메라 단속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거지요.

○김민기 위원 지금 신호위반 같은 경우에는 빨간불에 정지선을 넘어서면 감지카메라가 찍는 것 아닙니까, 밑에 감지선을 지날 때? 사각형으로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차장 김정석 예.

○김민기 위원 그것을 지나면 찍히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황영철 지금 여기에 성능 테스트한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경찰청차장 김정석 예.

○소위원장 황영철 그러니까 이 성능 테스트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화면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있지요?

○경찰청교통안전과장 이상로 예,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습시다.

○소위원장 황영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받으시는 게 좋겠는데요, 취지에 공감은 하시니까.

○유대운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SBS TV에서 이틀간 방영을 했습니다. 방영을 했는데 이것은 그 방영되기 이전에 법률안이 제출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내용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이 법률이 통과되어서 가도 끼어들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끼어들기가 교차로뿐만 아니라 특히 대한민국에 아마, 뭐라고 그럴까요. 문제가 있는 곳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만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문제해결이 단속 경찰관이 없어도 지금 범칙금 과태료 부과 자동적으로 되는 시스템인데 이것은 100%입니다, 100%.

예를 들어서 북악터널 길 내부순환도로의 경우 월곡이 있고 동대문 빠져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데가 전국에 한 20개소 정도가 있더라고요. CCTV를 3개를 동시에 붙여 놓습니다. 3개를 붙여 놓으면, 2개까지도 감지를 해 내지 못하더라고요. 3개를 붙여 놓으니까 100%, 지금 경찰청에 3개 붙여 놓은 데가 있어요, 두 군데인가 세 군데. 대당 예산이 1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3개를 붙여 놓으면 어느 지점에서 끼어드는 것까지도 다 판독을 해 내더라고요.

그러면 그 문제점까지 담아낼 수 있는 법안이 여기서 되어야지 이것 만들어 놓고 또 그 부분을 법안을 만들어 놓으면 누더기 법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법률을 집행하는 데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시민들이, 단속대상도 불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밖에 안 된다고요.

SBS 보셨지요? 안 보셨나요? 교통관리관,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경찰청교통관리관 최경식 일전에 교차로에서의 사고 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대운 위원 사고 난 게 아니라 끼어들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끼어들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경찰청교통관리관 최경식 지금 제가 교차로에서의 꼬리물기하고 끼어들기 의미를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유대운 위원 교차로 끼어들기는 이해하는데 램프……

○경찰청교통관리관 최경식 지금 여기에서 끼어들기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교차로 들어가거나 들어오거나 진출입로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꼬리물기라는 것은 교차로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두 가지를 다 혼용해서 자꾸 말씀을 하셔서 가지고……

○유대운 위원 혼합되는 법령을 만들자 이런 얘깁니다. 따로따로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임기응변으로, 우선 현안 문제이니까. 지금 캠퍼더인가요, 뭐로 단속하지 않습니다? 단속경찰관이 들고 다니며 촬영해서 부과하는 것, 장비 이름이 뭐지요?

○경찰청교통관리관 최경식 이동식단속카메라입니다.

○유대운 위원 그것으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떻게 일일이 휴대용으로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사항까지 부합해서 법률을 한꺼번에 만들어버리면 예산도, 전반적으로 볼 때 전국에 한 20여 군데 상습 끼어들기 지역까지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SBS 안 보신 것 같아요. 모니터링 하는 사람 없어요?

○**경찰청교통관리관 최경식** 저희들이 교통 관련 해서 보도되는 것은 저희가 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 제가 지금……

○**유대운 위원** 제가 그것을 전부 다 해 놓았거든요.

○**경찰청교통관리관 최경식** 우리 안전과장이 말씀을……

○**유대운 위원** 말씀해 보세요.

○**경찰청교통안전과장 이상로**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는 경찰관이 단속할 수 있도록 기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현장에서 다 단속할 수는 없어서 현재 신호위반이나 과속, 주정차 위반 이런 것도 무인장비를 이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이 단속한 위반자는 범칙금이 통보됩니다, 행위 책임을 물어서. 그런데 기계로 단속한 경우 본인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차량 소유주한테 관리 책임을 물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장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기계 단속을 통해서 끼어들기와 꼬리물기를 단속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이번 법률안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계 단속 부분은, 꼬리물기는…… 지금 현재 교차로마다 설치되어 있는 장비 중에 카메라는 신호 위반 단속 장비입니다. 그래서 신호 위반은 빨간 신호등이 켜졌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루프 검지기에 빨간 신호등이 들어왔는데 차가 진행을 들어와 있는 상태면 사진을 찍게 되는 겁니다. 그건 신호 위반이고, 파란 신호등인데도 불구하고 교차로가 정체가 있을 때는 도교법상 운전자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 파란 신호등일 때 새로 설치하는 카메라가 캐치를 해서 꼬리물기로 단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는 현장 경찰관이 단속을 해서 범칙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운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난 누구인가 했더니 잘 아시는 분이시구만.

SBS에서 이틀간 아주 전문적인 기획 보도를 했습니다. 이때 그 문제를 경찰청 관계자한테 인터뷰를 또 했습니다. ‘이 법령을 준비하고 있는냐?’ ‘아직 준비를 못 하고 있다.’ ‘예산은 얼마나 추정되느냐?’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간다.’ 이게 취재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생생하게 이틀 동안을 다 봤고요. 법안을 준비하라고 내가 지시를 이미 했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법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월곡 램프라든가 이런 것이 전국에 스물한 군데가 있더라도, 아주 상습적으로 3km, 4km씩 밀려요, 끼어들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의 단속의 최고 효과는, 지금은 CCTV가 다 붙어 있어요. 하나 붙어 있는 데도 있고 2개 붙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2개까지도 감지를 못해내요. 빠져나갈 구멍이 생겨요. 그런데 3개를 동시에 해놓으니까 끼어드는 장소와 이것까지도 식별이 거의 100%, 지금 경찰청에서 설치한 데가 두 군데 있더라고요, 세 군데 설치한 게.

○**경찰청교통관리관 최경식** 이것 시험상으로 서울 국기원 사거리하고 경부고속도로 하행 양재 진출로에 해서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유대운 위원** 두 군데 있어요. 두 군데를 전국적으로 해서 SBS가 취재를 했는데, 그 취재 내용을 꼼꼼하게 보니까 내가 이 법령을, 법안소위 위원이니깐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도 수반 얼마나 들어가는지 좀 살펴서 한번 해봐라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그것이 여기에 포함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예요.

어때요, 생각이?

○**경찰청교통안전과장 이상로** 잠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군데, 경부고속도로상의 한 군데하고 국기원 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이 법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은 안 하고 장비 개발 그래서 시험 운영 중입니다. 시험이라는 표현도 적절치 않을 수가 있는데, 단속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월곡램프나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것은…… 현재 꼬리물기, 끼어들기 단속 장비는 국내에 설치

된 게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대운 위원 만들어야죠, 상습 지역인데. 4km, 5km씩 밀리면, 한번 상상해 봐요.

○경찰청교통안전과장 이상로 그래서 과태료 근거 조항을 이번 도교법 개정안에 포함을 시켜 주면 장비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려고 그러합니다.

○유대운 위원 그러니까 근거 조항을 여기 넣어 줄 테니까 근거 조항에 허점이 없도록 연구된 게 있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경찰청교통안전과장 이상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꼬리물기를 한다든가 끼어들기를 하면 도교법상 범칙금 통보 대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속 근거는 기 있고, 그걸 기계 단속했을 경우 범칙금 부과를 못 하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자는……

○유대운 위원 그 얘기는 다 알아듣는데요. 그 얘기는 알아듣는데, 지금 장비가 국내에 두 군데 외에는 설치된 데가 없다. 그런데 그 장비가 이미 개발이 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예산 갖다 붙이면 되게 되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지금 안 한 것 같아요.

○경찰청교통안전과장 이상로 그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근거 규정이 있어야 장비 도입을 할 수……

○유대운 위원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그 법령이 정비되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2개가 맞아야 결국은 법 시행이 출발해서 효과를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청교통안전과장 이상로 저희들이 금년에 200대분을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49억 원 정도를. 그래서 이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이 신설되면 지금 개발된 장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김민기 위원 간단히, 궁금한 거요.

루프 검지기가 몇 군데를 통과해야 지금 신호 카메라에 찍힙니까?

○경찰청교통안전과장 이상로 기술적인 부분은 아주 상세히는 모르지만 루프 검지기를 2개를, 예를 들어서 교차로를 지나가시면서 한 번 지나가면 과속 단속을 한다 그러면 첫 번째 루프 검지기를 지나고 다음 루프 검지기를 지날 때 기술적으로 그 속도를 가지고……

○김민기 위원 그러니까 루프 검지기가 지금 네

모 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한 세트입니까, 아니면 루프 검지기가 네모 칸이 있는 게 2개가 한 세트입니까?

○경찰청교통안전과장 이상로 2개가 한 세트……

○김민기 위원 그런데 그것이 대개의 경우 진입에 있죠?

○경찰청교통안전과장 이상로 예.

○김민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꼬리물기 단속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과란불에 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호 위반에 안 걸린 겁니다, 꼬리물기가. 그런데 거기서 신호가 바뀌었어요. 이 차량은 신호 단속에 안 걸린 거예요. 그런데 꼬리가 물려서 계속 들어갔죠. 그런데 이것을 기술적으로 루프 검지기를 두 군데에다 설치해서 둘 다 걸릴 경우가 아니라 단 한 군데만이라도 걸리면 신호 위반으로 잡으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신호 위반으로 찍히게?

○경찰청교통안전과장 이상로 기술적인 부분은 실무……

○김민기 위원 아니, 기술적인 게 아니라.

그런데 그것으로 하면 되지 꼬리물기를 제거하기에는 민원이 대단히 많이, 이 판독을 아마 상황실에서 판독하게 될 것 같은데요.

○경찰청교통안전과장 이상로 아까 경찰청 차장께서 하신 말씀은 자료에도 있듯이 약간의,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사진을 찍어서 컴퓨터로 전송하는 과정에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0.1% 정도의……

○김민기 위원 그러니까 그 카메라를 찍을 때 검지기가 없어도…… 누가 찍는 거예요? 검지기가 있어야 찍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검지기 없이 찍어서 꼬리물기다라고 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찰청교통안전계장 한창훈 경찰청 교통안전계장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신호 위반 카메라는 그렇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있는 정지선에 검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황색 그다음에 적색으로 바뀝니다. 적색으로 바뀌었을 때부터 이 카메라가 작동을 시작합니다. 적색으로 바뀌었는데 정지선에 진입하는 차량부터 여덟 커트를 계속해서 촬영을 해 갑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가 다 우리 시스템

상에 저장이 되고 민원인들이 요구할 때 그 화면을 보여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시스템은 정지선에서 적색일 때 이거를 촬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꼬리물기는 아까 그 법의 취지처럼 녹색에 차가 들어 왔는데 적색으로 바뀌기 전까지 이 차가 못 지나가고 교차로 안에 갇힌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는 검지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카메라가 2개가 있습니다. 번호판을 인식하는 카메라가 있고 전체 영상을 추적하는 차량의 어떤 궤적을 추적하는 광각 카메라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궤적을 추적해서 이게 녹색일 때 들어왔다. 그게 이제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는데도 그 안에 갇혀 있는 모든 차량들을 전체적으로 영상으로 찍어 가지고서 번호판 인식 카메라하고 일치를 시켜 가지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차량들을 꼬리물기로 단속하는 겁니다.

○김민기 위원 그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 검지선이 밖에도, 진출하는 곳…… 진입할 때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신호 위반을? 진출하는 데도 검지선을 놓으면 하나 갖고도 자동으로 꼬리물기는 다 신호 위반으로 걸리죠.

○경찰청교통안전계장 한창훈 지금 꼬리물기 단속 카메라 장치는 검지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영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그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새로 개발된 이 영상 카메라는 신호 위반도 동시에 단속 가능합니다. 신호 위반, 과속, 꼬리물기가 다 동시에 가능한 카메라입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것은.

○김민기 위원 지금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검지선이 2개만 있으면 꼬리물기는 법 하나도 안 고치고도 국민들이 다 납득할 수 있어지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들어갈 때 파란불이었는데 이걸 내 권리인데—물론 법이지만—이상하게 과태료를 내가 또 내게 생겼다 이렇게 돼서 법 조항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검지선이 지금 왜 하나여야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경찰청교통안전계장 한창훈 위원님,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담당 전문가가 알겠지만 지금 검지선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도입해서 이 과태료 규정이 주어지게 되면 적용해야 될……

○김민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잘 들어 보시면 지금 검지선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꼬리물기가 그냥 무사통과되는 겁니다. 검지선이 2개만 되어 있으면, 신호가 빨간불인데도 나가게 되면 이거…… 아, 파란불이어도 어떻게 되는 거죠, 한참 동안 서 있고 나가면?

○경찰청교통안전계장 한창훈 파란불일 때 전방 신호 상황을 예측해서 꼬리가 물려 있을 때는 진입을 안 해야 되는데 녹색불이라고 무조건 꼬리를 물고 가서 교차로 중간에 차량들이 서서 다른 진행 방향……

○소위원장 황영철 자, 논쟁이 계속 지연돼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물적으로 제도상의, 시스템상의 문제는 추후로 더 논의하기로 하고요.

중요한 건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를 무인 단속 대상에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김태원 의원님과 홍문종 의원님 안 중에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를 무인 단속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은 두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안으로 만들어서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그 이외 제22항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3.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4.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17시47분)

○소위원장 황영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24항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재옥 의원님하고 강기윤 의원님이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제출하셨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재옥 의원님은 거짓 신고의 처벌 규정을 현행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서 이 액수를 60만 원 이하로 올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강기운 의원님 안은 이걸 경범죄처벌법에서 삭제하고 형법에 넣어 가지고 형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려는 그런 차이만 있습니다.

대체토론 요지를 말씀드리면, 강기운 위원님이 형법으로라도 강력 조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박남춘 위원님은 처벌 강화 필요성을 고려할 때 입법 취지는 타당하지만 허위 신고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불합리하게 처벌받는 사례는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1번,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거짓 신고한 경우 처벌 규정을 상향하자는 그런 공동 취지가 있는데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윤재옥 의원님 안은 현행법을 60만 원으로 올리는 그런 내용이고, 강기운 의원님 안은 제일 밑에 각주에 달았습니다마는 강기운 의원님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같이 발의하셨습니다. 거기에서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시고, 이게 통과된다고 전제하고 가정하고 경범죄처벌법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 상향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국가기관인 경찰이나 소방의 정상적인 업무 방해를 줄이고, 출동 등에 의한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간 거짓 신고 건수가 거의 1만 건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강기운 의원님 안은 일단 말씀드린 대로 형법과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다음은 경찰청 측에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김정석 전문위원 의견과 같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 지금 현재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리자는데 10만 원 과태료가 1만 건 정도 발생된다는데 부과는 얼마나 됐어요, 과태료 부과한 수치가? 거짓 신고가 1만 건이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10만 원으로 처벌한 것은 몇 건이나

처벌을 했느냐고요.

○경찰청차장 김정석 저희들이 07년부터 통계를 보면 13.7%에서 한 17.3%까지 이렇게 됩니다.

○백재현 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1700건 이상 처리했다는 얘기인가요?

○경찰청차장 김정석 예, 1600건, 1700건 이 정도입니다.

○백재현 위원 그러면 한번 처벌받은 사람은 또 거짓 신고한다고 보나요, 안 한다고 보나요? 10만 원의 과태료 받은 사람이 또 거짓 신고를 하나요, 안 하나요?

○경찰청차장 김정석 아무래도 굉장히 경각심을 주는 것을……

○백재현 위원 그러면 17%가 아니라 90%, 8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더 중요하고 앞에서 선행해야 될 일 아닌가? 한 번 걸려 10만 원이라는 과태료 부과한 사람은 절대로 다시 또 허위 신고를 안 할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그것이 처벌을 보통 13%밖에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1만 건 치면 1300건 처리했다는 얘기지요? 지금 그 말씀이지요?

○경찰청차장 김정석 예.

그런데 이 13.7% 중에는 대부분이 경범 처벌로 났습니다, 형사 입건되는 것보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왕 경범 처벌을 하는 거면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인 퍼센티지를 높이는 것도 굉장히 방법인데 경범 처벌 받더라도 그 자체를 처벌 규정을 상향 규정을 좀 높이자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허위 신고를 좀 줄여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백재현 위원 줄이자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우선 1만 건의 신고가 들어오면 이것에 대해서, 거짓 신고에 대한 제재 조치를 우선 10만 원씩 부과하기로 했으면 10만 원을 부과를 해 봐야 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 아닐까요? 10만 원의 과태료 한번 받는 사람은 두 번 다시 거짓 신고 안 할 텐데요?

○경찰청생활안전국장 정용선 생활안전국장인데요.

저희가 그것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공중전화 같은 것을 이용해서 신고하고 가 버린 그런 경우, 또 저희가 검거는 했지만 아이들이 장난 전화를 했든지 이런 경우에는 처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은 통계에

서 지금 누락이 돼서 그렇고 저희가 최대한……

○**백재현 위원** 그 통계 자료 좀 줘 봐요, 저희들이 자료는 없는데.

○**경찰청생활안전국장 정용선** 최대한 발견해서 처벌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특히나 항공기 폭파 협박 같은 허위 신고 같은 경우는 경찰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한테 큰 피해와 불편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도 발생이 됩니다.

○**백재현 위원** 저는 일단 이 정도로 질문할게요. 다른 분 또 말씀하시지요.

○**소위원장 황영철**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柱 委員** 발의하신 분께서 한 말씀 하시지요.

○**윤재옥 위원** 생활안전국장, 60만 원 이상이면 우리가……

○**경찰청생활안전국장 정용선** 신병 확보.

○**윤재옥 위원** 신병 확보가 가능하잖아요. 60만 원이라는 기준이 말입니다, 허위 신고를 했을 때 사람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만 원으로 한 것입니다. 60만 원 이상 우리가 벌금 할 수 있을 때는 사람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허위 신고로 인해서 아까 생활안전국장이 얘기했지만 사회적 비용이 엄청납니다. 출동해서 어떤 경우에는 항공기 안에 폭발물 설치했다 이런 것은 완전히 확인될 때까지 승객이 출발을 못 하고 이런 엄청난, 경찰뿐만 아니라 관계되는 기관 전부 출동해야 되고 사회적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까 백재현 위원님께서도 처벌을 형량을 높이는 것보다도 처벌의 확실성이나 이런 것을 좀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량 좀 높이고, 경찰에서는 허위 신고하면 처벌을 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확실히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경찰의 입장이 이 허위 신고 범죄에 경찰력을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다 잡아서 다 처벌한다는 것은 사실 다른 큰 범죄하고의 또 경찰 투입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하면서 처벌도 좀 높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성호 위원** 한 100만 원 해요.

○**윤재옥 위원** 너무 많이 올리면 또……

○**백재현 위원** 그런데 통계자료 준 것이 13.7, 14.2, 09년도 17.3로 올라가다가 2010년에 또 떨어지거든요. 노력을 덜 하는 것 같은데요. 10년, 11년 다시 떨어져 버리는데요.

○**소위원장 황영철** 이 법안은 2개의 법안입니다. 윤재옥 의원님 법안하고 강기운 의원님 법안이기 때문에 강기운 의원님 법안을 만약 하게 될 경우에는 윤재옥 의원님 법안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윤재옥 의원님 법안 같은 경우는 의결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거고요. 그렇지요?

강기운 의원님 법안이 좀 의견이 다르시면 윤재옥 의원님 법안에 대해서만 가결하면 되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

○**백재현 위원** 강기운 의원님 안은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하면 쓸 수가 없는 것이고, 강기운 의원님 안은 좀 상상 밖이고 윤재옥 의원님 안도 60만 원에 대해서 높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60만 원은 경찰에서는 사람들 데려올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들 편에서 본다면 경찰서 가는 것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거든요.

○**전문위원 임재주** 또 형법 개정은 법사위 소관입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것 같이 논의하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 임재주** 일단 형법 개정이 같이 법사위에 지금……

○**백재현 위원** 경범죄 삭제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유대운 위원** 지금 공무집행방해죄로 해도 되는데, 이것이 공무집행방해도 되니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되는데, 문제는 입법 취지는 100% 동의하고요.

다만, 너무 이것이 포괄적이다, 범위를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윤재옥 위원** 허위 신고에 대한 기준은 명확합니다. 명확하고요, 다만 백재현 위원님 말대로 이 액수가 정말 적정하느냐 이 문제는 충분히 위원님들 논의가 가능한데 범위에 관해서는 허위 신고……

○**유대운 위원** 이 정도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가?

○**윤재옥 위원** 예, 충분합니다. 없고, 액수가 과

연 60만 원이 너무 높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지만만……

○**金永柱 委員** 안 그러면 한 위원회의 의원님 두 분이 같은 이런 안이 왔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보류시켰다가 같이 의견도 조율해서 하면 안 됩니까?

○**유대운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윤재옥 위원** 보류할 사항은 아닙니다. 형법 개정한다는 것은 사실 그것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허위 신고했다고 형사 처벌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정말로 공청회 거쳐야 되고……

○**유대운 위원** 두 분 의원 중에 발의한 것이 하나는 너무 강하고 하나는 걱정 수준이라면 걱정 수준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소위원장 황영철** 그러면 위원님들의 입장을 헤아려 보니까 윤재옥 의원님의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백재현 위원** 하는데 60만 원이 적정하느냐가 문제인데요.

○**박성호 위원** 적정해요.

○**유대운 위원** 사람을 데려오려면 그것이 한계선이라니까.

○**윤재옥 위원** 우리나라가 사실 이런 데 대한 처벌 형식이 되게 약한 편입니다.

○**박성호 위원** 지나치게 약해요.

○**김현 위원** 보안 사범에 대해서는 강하고 일반 사범에 대해서는 약하고 그렇습니다.

○**윤재옥 위원** 싱가포르 이런 데 가서 보면 껌 뱉어도 20만 원, 30만 원이고 휴지 버리면 80만 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60만 원은 지금 현재 물가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크게 과한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金永柱 委員** 미국은 1년에서 3년 2800만 원이고 우리나라는……

○**백재현 위원** 10만 원에서 60만 원이면 이것 600% 올리는 거야.

○**박성호 위원** 그것은 퍼센티지 문제가 아니지요.

○**윤재옥 위원** 이것은 다른 어떤 경고적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대운 위원** 비싸니까 하지 말라는 것인데 사실 항공기 같은 것 엄청난 국력 낭비요, 치안 낭

비고, 그렇게 보면 하지 말라는 뜻이지 누가 위반해서 벌금 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취지가.

○**金永柱 委員** 외국 사례를 보는 것 같으면 강기운 의원 이야기도 비슷한……

○**유대운 위원** 윤재옥 의원안으로 의결하지요.

○**소위원장 황영철** 일단 의견을 모아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23항 윤재옥 의원님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강기운 의원님 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더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5. 경찰대학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17시58분)

○**소위원장 황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찰대학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주** 윤재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찰대학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국가치안 부문에 종사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설립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체토론 내용은 박남춘 위원님은 중장기적으로 설립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경찰대 폐지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학원까지 설립하는 데 대한 논란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 유승우 위원님은 치안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대학원 설립이 필요하고, 다만 학장을 대학 행정에 식견이 부족한 경찰 간부가 담당할 것이 아니라 전문적 식견을 가진 민간 전문가가 담당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동그라미에 치안대학원 설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기타 자세한 운영 규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석·박사 학위과정의 교과를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결정한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 대통령의 정·부교수 임용권 중 부교수의 임용권만 경찰청장에 위임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다른 국립대학인 국방대학원하고 비교했을 때만 봐도 교수 및 부교수 임용권자는 대통령이지만 그것을 국방장관에게 위임을 하고 있는데 경찰대학설치법에서는 지금 부교수 임용권만 경찰청장에게 위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정해서 다른 국립대학과 같이 정·부교수 모두 기관장인 경찰청장에게 위임하는 안이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2년 이상의 대학원으로 하고 석·박사 학위과정 이수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이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마지막으로 치안대학원 학생에게 수업료 등 납부금을 부과하는데 이 납부금을 통해서 운영비 등 소요 경비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김정석 경찰청 의견은 저희 타 국립대학과의 통일성을 고려하고 대학의 자율성 확보,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서 전문위원 수정의견대로 수용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 여기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찰청미래발전담당관 서연식 한 2억 5000정도 예산이 소요되고요, 등록금 수입이 3억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 가능합니다.

○백재현 위원 그러면 경찰 대학원을 운영하려면 전체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치안대학원?

○경찰청미래발전담당관 서연식 대학원 전체 운영하는 데 2억 5000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2억 5000 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경찰청미래발전담당관 서연식 왜냐하면 기존의……

○백재현 위원 아니, 본인 부담까지 합쳐서……

○경찰청미래발전담당관 서연식 기존의 교수와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교재 발행비라든지……

○백재현 위원 대학원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돼요?

○경찰청미래발전담당관 서연식 그것이 지금 현재 경찰대학 인원과 시설을 전부 활용하면서 연구교재라든지 이런 데만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2억 5000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지금 현재 경찰대학원 과정이 민간 사립 대학원이나 또는 국립대학원에 이런 과정이 없나요, 있나요? 있겠지요?

○경찰청차장 김정석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것이 수요가 얼마나 되지요, 전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양들이?

○경찰청차장 김정석 지금 경찰관 학부 과정을 운영 중인 대학이 한 130곳 정도 되는데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18개 정도 됩니다.

○백재현 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입학생 1년 정원어?

○경찰청차장 김정석 정원이……

○백재현 위원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 의견을 좀 들은 것이 있나요? 자료로서 받은 것이 있나요? 교육부 의견은 어때요?

○경찰청기획조정관 이만희 자료를 특별히 따로 받은 바는……

○백재현 위원 그와 관련해서 교육부 의견은 받은 것이 있느냐고요.

○경찰청미래발전담당관 서연식 치안대학원과 관련된 교육부 의견은 특별히 저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수용해 주고 있습니다.

○경찰청기획조정관 이만희 별다른 의견은 없는 것으로 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金永柱 委員 그런데 다른 대학의 경찰학과에서 석·박사 과정이 있을 텐데 그게 교육부에서 당 학교들의 어느 정도 여론수렴도 해 봐야 될 거고, 그리고 또 특히 경찰대학의 어떤 석·박사 과정을 설립하면 실제 나중에 우열이 또 가려지는 그런 결과가 안 오나요?

○경찰청차장 김정석 다른 대학원하고 저희 경찰대학의 치안대학원하고 조금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다른 일반대학의 대학원보다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설치하려는 것이 저희 현장 실무와 연구를 좀 더 다른 대학의 대학원보다 굉장히 강화를 할 수 있고, 사실 저희들 치안과 관련해서 범죄학이나 다른 사이버범죄 최첨단범죄 과학수사 이런 데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현장과 연계해서 굉장히 보완하는 그런 효과가 있

을 것 같습니다.

○**金永柱 委員** 그런데 그 말씀은 맞는데 그렇게 했을 적에 타 대학에 경찰학과가 폐쇄까지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경찰청차장 김정석**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0개 경찰행정학과가 있는데 그중에 대학원이 있는 데가 한 18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학부 과정에 비해서 지금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유대운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본 건은 대단히 우리 동료 위원한테 미안한 애기인데 접근이, 설립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또 타 대학원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현재 경찰대 폐지론 의견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차장께서 인정하지요, 그 여론도 있다는 것을?

○**경찰청차장 김정석**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 방식이나 이런……

○**유대운 위원** 아니, 의견이 있느냐고만 물어봤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하시면 돼.

○**경찰청차장 김정석** 예.

○**유대운 위원** 두 번째는 이런 편의성은 있습니다. 경찰대를 나와서 바로 경찰대학원을, 다른 타 대학에 가지 않고, 타 대학은 사립대학 같은 경우 돈도 많이 소요되고 그렇게 본다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주 별개의 사안으로 따로 봐야 된다……

지금 현재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 경위 이상 간부 비율이 어떻게 돼요?

○**경찰청차장 김정석** 경찰대학 출신이 지금 현재 경찰에 한 2700……

○**경찰청기획조정관 이만희** 2800 정도 됩니다.

○**유대운 위원** 경위 이상, 경찰대 출신이?

○**경찰청차장 김정석** 예.

○**유대운 위원** 그러면 2800. 또 비경찰대 출신은요?

○**경찰청차장 김정석** 경위 이상 총 비율이 저희들이 한 3만 9195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간부 후보생이 1356명이고……

○**유대운 위원** 그냥 비경찰로만 구분해요, 간단하게.

○**경찰청차장 김정석** 예, 3만 9195명 중에 경대 출신은 2743명밖에 없습니다.

○**유대운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약 60%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차장 김정석** 7.1% 정도 됩니다.

○**윤재옥 위원** 아니, 1%지.

○**김현 위원** 그것은 저거예요. 경대 만들어진 것이 늦어졌으니까……

○**유대운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 좀 이어갈게요.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경찰조직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경찰대학원을 지금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공감대를 얻으려면 두 가지 충족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경찰의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경찰청차장 김정석** 예.

○**유대운 위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민생치안을 확보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출발하고 국민들도 동의합니다. 여기에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렇지요?

○**경찰청차장 김정석** 예.

○**유대운 위원** 두 번째 바라는 것이 경찰청이 지금 외청입니다. 독립청으로 우선 하고 나중에는 경찰부로 승격도 돼야지요?

세 번째의 문제는 될까요?

경찰조직이 지금 침담형입니다. 그렇지요?

○**경찰청차장 김정석** 예.

○**유대운 위원** 이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출발해도 늦지 않을 텐데 우물에서 당장 뜨거운 물 달라 하는 격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한번 해 보실래요? 논리적으로 답변하셔야 됩니다.

○**경찰청차장 김정석**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치안대학원을 설립하려는 것은 치안대학원에 가는 학생들도 경찰대학생보다는 오히려 다른 일반인들에게 더 많이 문호를 좀 개방하려고……

○**유대운 위원** 그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경찰간부들의 통합적인 정신이 먼저 발휘돼야 민생치안이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부들 사이에도 이 벌어지는 사태, 지금 경찰대와 비경찰대 간의 알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두 번째 책임자로서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치안대학을 경찰대에 세우면 예산은 두 번째 문제이고, 그 부분이 얼마나 형평성의 문제 등등에서 경찰 내부의 문제가 얼마나 더 이익보다 손해가 더 많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경찰청차장 김정석** 위원님, 저희들이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치안대학원 설립 문제에 관해서……

○**유대운 위원** 설문조사 했다?

○**경찰청차장 김정석**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유대운 위원** 차장님!

○**경찰청차장 김정석** 예.

○**유대운 위원** 설문조사 과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경찰 내부 설문조사가 공신력이 얼마나 있을지를 잘 알면서 그 얘기를 여기서 합니까?

○**경찰청차장 김정석** 위원님, 저희들 경찰……

○**소위원장 황영철** 차장님, 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의사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유대운 위원** 양해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제가 보기에 치안대학원 설치 규정은 경찰대학설치법 일부개정안으로 논의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연말에 행안위에 왔는데, 지금까지 치안대학원 설치와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하거나 상의드린 적 있습니까?

○**유대운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없지요? 전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 법을 심사하는 이 순간을 이용해서 치안대학원 설치와 관련되어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아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지에 대한 찬반의 여부를 떠나서 과연 치안대학원을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리고 소요되는 예산이 어떻게 소요될 건지에 대해서 잘 준비되었으리라고 생각하니까 추후에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보고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알고 나서 법안을 심의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심의하고 동의를 얻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유대운 위원** 예, 생각하면서 한 말씀만……

○**김현 위원** 잠깐만요, 저도 얘기할게요.

○**유대운 위원** 아니, 한 말씀만 부칙으로 말씀드려야 돼.

이 법안의 허점은 또 있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그것은 나중에 논의하시자고

요.

○**유대운 위원** 경찰청장이 차관급에 불과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차관도 아니고 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경찰청장이 부교수 임용권을 갖는다는 것은 이것만 해도 벌써 허점을 스스로 드러낸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현 위원** 물론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차원의 문제도 문제지만 지금 제안 이유 자체를 놓고 봐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제도적 기반 및 조치가 미흡한 실정인데 대학원을 만든다, 공부를 한다, 논리적으로 저희가 볼 때 안 맞아요. 그러면 연구소를 만들어야지요. 경찰 안에 치안 문제를 다루는 연구소를 만들어서, 그런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사실은 이것보다 더 한 것은 한마디만 드릴게요.

국정원 조사 제대로 하세요. 그러면 뭘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시기적으로도 안 맞아요. 이것 나오면, 지금 경찰의 국민적 신뢰가 어느 정도로 실추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황영철** 제가 정리한 대로 오히려 효과적인 논의를 위해서 그것을 따로, 이 법안 심의 과정을 통해서 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살펴보고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경찰대학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려고 하는데 일단 윤재옥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윤재옥 위원** 내가 발의를 했으니까 양해는 하는데 제가 발언을 좀 할게요.

○**소위원장 황영철** 예, 그래 주시지요.

○**윤재옥 위원**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설립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사실은 경찰 내부에는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 소위 말해서 아까 연구소 이야기도 했지만 R&D 기능이 없어요. 없고 현장 업무, 현업 업무에 급급하다 보니까 연구개발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대학은 사실은 경찰 간부를 양성하는 교육에 그치고 있고 또 경찰 간부들 재보수 교육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경찰대학을 졸업하거나 또는 다른 대학을 나와서 경찰 하고 있는 사람들 사립대학에 전부 다 가서 개인적으

로 석·박사 학위를 받고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말 경찰대학하고는 어떻게 보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치안대학원이라는 문제는.

꼭 필요한데 어쨌든 위원님들의 공감을 얻는데 아직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깐 보류한다는 데 동의하고, 경찰청에서는 경찰대학장하고 차장님께서 관계되는 참모들이 행안 위원님들한테 우선 충분히 설명해서 공감을 좀 얻도록 하십시오.

○경찰청차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재옥 위원님 말씀대로 치안대학원의 설치에 대해서는 공감을 얻는 바가 있으나 충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일단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전문위원님 잘 정리해 주시고요.

이제 경비업법이 마지막이지요?

○전문위원 임재주 경찰은 마지막입니다.

26.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7.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8.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발의)

2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30. 경비업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임수경·진선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3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규 의원 대표발의)

3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3.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18시14분)

○소위원장 황영철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 26항~제33항까지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과 경비업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런데 청원을 여기서 다루어요?

○전문위원 임재주 청원 내용이 법률하고 같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알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주 자료 1페이지를 먼저……

경비업법에 대해서는 현재 여섯 의원님이 법안을 발의하셨고 임수경·진선미 의원님은 임수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과 같은 내용의 청원을 제출하셨고 정부안이 1건 들어와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청래 의원님 안은, 첫째 무허가 경비업자에게 도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복장 및 장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교육을 받지 않거나 경비원 명부에 없는 자를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경협 의원님 안은 단체교섭 또는 노동쟁의 장소에 경비업자 및 그 경비원의 배치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임수경 의원님 안은 경비원 사전배치 신고를 배치허가로 변경하고, 경비업의 허가기준을 강화하며, 경비원의 복장 및 장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윤재옥 의원님 안은 무허가 경비업자에게 도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하며, 경비원의 복장 및 장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임수경·진선미 의원님이 소개하신 청원은 임수경 의원님 안과 같습니다.

이상규 의원님 안은 경비원 등의 결격사유를 변경하고, 경비원의 복장·증표 착용의무 및 경비업무 수칙을 신설하도록 하고, 배치폐지명령을 확대하며, 경찰의 개입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황영철 소위원장, 박성호 위원와 사회교대)

강기윤 의원님이 제출하신 안은 제복·장구·출동차량 등에 대한 현행 행정안전부령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시정명령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정부안은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경비업체 임원 및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대체토론을 말씀드리면 백재현 위원님이 노사분규 현장에 경비원 배치를 제한하고 경찰력 개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윤재옥 위원님은 모든 노사분규 현장에 경찰력을 투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노사분규 현장의 경찰력 투입 기준을 검토해서 현행에 부합하는 적절한 수준의 경찰력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노사분규 현장의 경비원 배치 수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수경 위원님은 현행 사전배치신고제의 경우 경비원 배치 이전에 경비원에 대한 경찰의 신원 파악이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치허가제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이 경비업법에 대해서는 심의 내용이 매우 많기 때문에 주제별로 하나씩 하나씩 심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비업의 허가 관련 내용인데요.

첫 번째, 경비업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법률로 규정을 상향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임수경 의원님 안에 있습니다.

현행은 허가기준인 경비인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령을 보시면 자본금 같은 경우는 일반경비업은 5000만 원, 특수경비업은 3억 원 이상이 되도록 했고, 경비인력은 시설경비업무의 경우 20명 이상, 호송·신변보호·기계경비의 경우 그에 맞게 별도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특수경비업무의 경우 특수경비원 20명 이상 이런 식으로 경비업무별로 허가기준을 별도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임수경 의원님 안은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허가 세부기준을 법률로 상향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률로 상향하면서 일부 허가요건을 강화하자는 건데요. 자본금 같은 경우 2억 원 이상, 경비인력 기준도 20명 이상으로 하되 3년 이상 경력 정규직 경비원 10명 이상 포함해서, 경비지도사 1명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법률로 상향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타인의 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경비업무 특성을 고려했을 때 영세업체 난립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본금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일반경비업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억 원으로 올리자는 게 임

수경 의원님 안인데 현재 5000만 원 기준에 비해서 경비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또 2010년에 개정이 됐는데요. 그전에는 1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보다도 더욱 올리자는 게 임수경 의원님 안입니다.

또 경비인력 기준도 업무 특성을 고려해서, 현재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임수경 의원님 안은 이것을 20명 이상 3년 이상 정규직을 포함하도록 했는데 이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또 경비업체가 항상 정규직을 10명 이상을 채용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경비업체에 부담 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 그러면 1억짜리를 5000만원으로 낮추었습니까?

○전문위원 임재주 2010년에 낮추었습니다.

○백재현 위원 낮추었습니까?

○전문위원 임재주 예, 낮춘 걸 다시 올리자는 겁니다.

○소위원장대리 박성호 다음에 정부 측 의견을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김정석 저희들은 전문위원의 수정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박성호 다른 의견 없고요? 전문위원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정부에서?

○경찰청차장 김정석 예.

○소위원장대리 박성호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 경비지도사라는 제도가 어떤 제도인가요? 여기 경비지도사 얘기가 나오는데……

○경찰청차장 김정석 자격증입니다.

○백재현 위원 어떻게 해야 자격증을 따는 거지요? 그것 좀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시지요.

○경찰청차장 김정석 시험을 치거나 안 그러면 경찰 경력이 일정 기간 되면 거기에 면제가 되는……

○백재현 위원 그러면 지도사가 전국적으로 지금 얼마나 돼요, 자격증 나가 있는 사람이? 그 자료 좀 있어요?

○경찰청차장 김정석 1만 8000명입니다.

○백재현 위원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나 됐어요? 나는 처음 듣는 제도가 되어서……

○경찰청생활안전국장 정용선 97년……

○백재현 위원 그 자격요건을 잠깐만 소개 좀

해 주실래요? 어떻게 시험을 보고 시험과목은 뭐고 경력자는 어떻게 정하시지요?

그 자료 그냥 주시고, 진행하시지요.

(박성호 위원, 황영철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金永柱 委員** 그런데 경비업체의 자본금을 좀 적게 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경비업체는 생산업체가 아니라서 실제 소모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자본금이 일정 수준 안 되면 다음에 완전히 자본금이 없는 그런 회사로 전략을 합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좀 올려야 경비업체의 질적 향상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안 하고는 누구라도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본금을 올려야 아까 이야기대로 경비업체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소모성의 장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다음에 그냥 문 닫아 버리고 가 버리고 들어왔다 나갔다 제 맘대로 해도, 유지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을 올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찰청차장 김정석** 저희들도 일정 기준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자본금을 일반경비업체까지 2억 원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金永柱 委員**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생산업체 같으면 자본금이 그렇다고 해도 생산적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장비라든지 사고가 나면 장비의 감가상각으로 인해 가지고…… 5년 아닙니까, 벌써? 5000만 원 같으면 얼마 안 가서 자본금 잠식은 완전히 그냥 끝나 버린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후죽순처럼 경비업체가 탄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백재현 위원** 저도 김영주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2억이 적정하냐 1억이 적정하냐가 문제인데, 2억까지 올렸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지요?

○**金永柱 委員** 문제점 없지요. 능력되면 하는 거지.

○**백재현 위원** 기존에 있는 업체들은 지금 5000만 원짜리 회사라도 2억까지 하면 거치기간을 줘야 되잖아요.

○**전문위원 임재주** 2억까지 올리게 되면, 뒤의 페이지 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60%가 문을…… 지금 현재는 2억 미만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요.

○**金永柱 委員** 그런데 닫을 것은 닫고, 회사가 커야만 책임성도 강화되거든요. 닫을 것은 닫아 줘야지 아무 데나 갖다가 경비업체 풀어 놓고 이러니까 문제가 있다, 5000만 원 같으면 해 가지고 1건 처리하고 나서 문 닫아 버려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야 됩니다.

○**윤재옥 위원** 그런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규제가 너무 과도하면 사실은 대부분 영세한 사람들이 문을 닫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꺼번에 2억으로 올리기보다는 1억 정도로 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게 좋네요.

○**백재현 위원** 1억은 10%밖에 없어지지 않는 데, 91.8%니까.

○**박성호 위원** 개정 전 상태로 1억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백재현 위원** 그런데 91.8%가 지금 1억 이상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나……

○**金永柱 委員** 지금 경비업체가 총 몇 개나 돼요?

○**경찰청차장 김정석** 3870……

○**金永柱 委員** 3800개 같으면 절반은 합병해야 됩니다. 한 1800개 정도만 해도, 이렇게 합병해 놓으면, 같이 합병하면 자본금이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지금은 5000만 원이지요?

○**경찰청차장 김정석** 예.

○**金永柱 委員** 그러면 5000만 원 같으면 좀 올려서 합병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해 줘야 됩니다.

○**김민기 위원**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가 10명 이상 포함이 과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수정의견에는 0명인 거지요?

○**경찰청차장 김정석** 시설경비원 2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을 확보를 하면 되고 그것을 상시적으로 정규직으로 고용할 필요는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김민기 위원** 그러면 꺾데기만 있다가 일이 생기면 고용해서 해도 된다 이런 얘기지요?

○**경찰청차장 김정석** 지금 경비업체가 운영되는 실정이 대개 경비업체가 상시적으로 일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업체로 하여금 정규직으로 사람을 계속 고용하라는 게 현실적으로 경비업체에 굉장히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런데 모든 문제가 그렇게 즉흥적으로 소집이 되어서 일을 맡아서 즉흥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들어가니까 책임성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명 이상 포함되는 것이 과도하다면 단 몇 명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임성을 좀 부여해 줘야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회사지요. 그분들이 책임을 갖고 움직여야지요.

사장님 한 분 딱 계시다가 오더 받아서 그대로, 소위 말하는 병력을 확보해서 투입되는 그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 끝나면 다른 데로 가고요. 책임성의 부여가 전혀 없지요. 지금 여기서 책임성의 부여라는 것은 자본금의 현황도 보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이 자본금으로 됐지만 자본금 그대로 있는 데 있겠습니까? 자본 다 잠식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책임성을 부여하는, 자본금의 문제도 있지만 인력에 대한 문제도 검토해야 된다, 10명이 과하다면 몇 명이라도 그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경찰청차장 김정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경비업체의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이런 걸 향상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인데 현실적으로 경비업체가 상시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하고 이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을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이런 시스템보다는 경비원의 자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임원이라든지 이런 규제를 통해서 경비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고 그런 취지로 경비업법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여러 가지 우리나라 경비업체의 운영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상시적으로 정규직으로 고용을 감당할 수 있는 경비업체가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김민기 위원** 자격이라는 것은 군대로 치면 훈련소 나오면 그대로 전쟁 투입하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서는.

○**경찰청차장 김정석** 예, 일정한 사전 교육이나 이런 것……

○**김민기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행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3800여 개 업체가,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에는 가혹하게 생기잖아요. 그러니 일정 부분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

는 자가 존재해야 된다, 임수경 의원님 안은 지금 1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지요. 3800개 업체가 10명이면 3만 8000명이 고용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불가능한 숫자다 이렇게 보신 것 아닙니까?

○**경찰청차장 김정석** 예.

○**김민기 위원** 그렇지만 만약에 이렇게 안정적인 경비업이 되고 있다면 우리가 염려하는, 국민들이 염려하는 일들은 잘 안 생기겠지요. 지금처럼 불안해하지는 않겠지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10명이 어렵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수정안에서는 그러면 1명이다, 2명이다, 3명이다가 나와야 되지요, 아예 이것은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경찰청생활안전국장 정용선** 그런데 위원님, 이게 보면 우리가 경비업의 어떤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허가제를 도입하고 일부 사안에 따라서 규제도 하고 지금 뒤에 내놓는다만 각종 규제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 건전하게 육성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 대부분이…… 예를 들자면 대형 회사를 경비하는 업체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새로운 공사를 신청한다 그러면 그 공사장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사시설을 이렇게, 자재 같은 것을 지키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상시 근무자를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재정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金永柱 委員** 그런데 실제 10명 이하가 된다는 문제라든지…… 경비업체가 우리가 17개 시도로 따졌을 적에 한 시도당 211개 정도 됩니다, 실제 평균을 따져 보면, 211개 정도 되는데 부산도 있을 건데 실제 부산 같은 데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10명 이내로 두었을 적에 어떤 현상이 있나 하면 사장 자기 들어가고 경리 들어가고 관리 들어가고 그러면 실제 경비원은 한두 명뿐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아까 이야기대로 적만 그렇게 등록만 시켜 놓고 실제 필요할 적에는 다른 경비업체에다 전부 불러다 쓰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이게 제대로 관리되었느냐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경비업체가 진정한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어떤 재산 보호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악용되는 부분이 많다, 이 악용되는 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물으려고 하면 이렇게 영세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이것은 사업 하는 사람 같으면 자기가 자기 손실을 보고 문 닫으면 되는데 이것은 남의 것을 실제적으로 인력을 가지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건을 안 갖추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윤재옥 위원** 그런데 현장의 실정을, 지금 경비업의 실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정말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자격 요건 갖춘 사람 가지고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게 좋은데 이번에 경비업법의 대부분의 내용이 지난번에 노사분규 현장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경비업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지금 만약에 과도하게 하면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 다 없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는 제가 보건대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이나 또 정부 측 의견대로 한 단계 우리가 수준을 높이고 점차적으로 현장을 봐 가면서 조금씩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한꺼번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 경비 해 가지고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사는 사람들 일할 기회가 전혀 없지요.

○**김민기 위원** 아니, 그건 조금 얘기가 다른데요.

일자리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정규직으로 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페이퍼로 존재하고 있다가……

○**윤재옥 위원** 현장 상황은 그게 안 되거든요.

○**김민기 위원** 지금 현장 상황이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은 페이퍼로 존재하고 있다가 일이 생길 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자리 창출과 안전, 안정을 꾀한다면 ‘몇 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가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는 더 유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책임성도 더 주고 또 전문성도 기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지요. 지금 계속 경비인력이 돌려막기 식으로 돌아다니는 것 아닙니까? 페이퍼로만 존재하고 있어요. 페이퍼로 존재하는 것은 지금 현재 5000만 원, 그런데 자본금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였지……

지금 이것이 촉진법의 상태에서, 진흥의 관점에서 있다가 지금 규제 관점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본금을 대폭 늘린단지 아니면 알맞은 인력을 정규직화해서 인력을 확보

하고 있든지……

그런데 지금 임수경 의원안은 10명이었는데 ‘10명이 과도하다. 현실을 모르는 것이다’ 그러면 현실을 아는 것은 도대체 0명이나, 1명이나, 2명이나, 3명이나, 아니면 5명이나 이것을 하자는 것이지요.

○**윤재옥 위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1명, 2명인지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알고 우리 법안심사소위원들이 그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지금 알고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김민기 위원** 지금 제가 정확히 알았으면 제가 주장을 합니다.

○**윤재옥 위원** 그러니까요.

○**김민기 위원** 10명이 맞다 혹은 0명이 맞다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아까, 중언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과연 1명, 2명, 3명, 4명, 5명 이것에 대한 검토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윤재옥 위원** 그렇다면 간사님, 이 문제는 우리가 정말 1명인지 2명인지, 또 자본금이 얼마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여기서 두부모 자르듯이 정한다는 게 상당히 저는 정말 탁상공론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너무 현실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당초에 이 법을 고치려고 하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완전히 또 안 맞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걱정이 됩니다.

○**백재현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황영철** 마저 듣고요.

○**백재현 위원** 말씀 다 하신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황영철** 그래서요?

○**윤재옥 위원** 다 했습니다.

○**유대운 위원** 내가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소위원장 황영철** 예, 백재현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백재현 위원** 어떻든 이것은 현안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보안을 해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데 저도 우선 동의하고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페이퍼 회사를 없애자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 5000만 원을 좀 늘려야 되는 것이고 늘리다 보니까 2억으로 하면 숫자가 갭이 많이 큰데 이걸 적절한 숫자로 조정을 하더라도 상시 인원을 3명이면 3명, 5명이면 5명 규정을 하는 조건이 붙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상시 인원 없이 페이퍼 회사로 계속 존재하는 한 자본금하고 아무 관계없이 계속 별도로 논다고 봐요.

그러니까 상시 인원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넣고 자본금을 적정 수준까지 올려서 이 회사가 회사답게 운영이 되게끔, 페이퍼 회사가 불가능하게끔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경찰청생활안전국장 정용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예.

○**경찰청생활안전국장 정용선** 그런데 이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아주 중견·우량 이런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저희 경찰에서도 기본적인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비용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값싸게 이런 경비를 할 수 있는 영세 사업장이라든지 시장 경비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경비 이런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를 들어서 건축·신축 현장 같은 데 그렇게 일정 기간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다가 또 축소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면 인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비용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문제, 또 값싼 자기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근이 취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 규제하는 부분은 조금 단계적으로 하시고 뒤에 나올 여러 가지 집단적 불법행위 그런 개입이라든지 노사분규 개입이라든지 그런 것을 규제해서 이게 건전하게 육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지금 이게 법인이나 개인이나는 관계없이 자본금 규정만 있는 것이지요?

○**경찰청생활안전국장 정용선** 법인이지요.

○**백재현 위원** 전부 법인입니까?

○**경찰청생활안전국장 정용선** 예.

○**金永柱 委員** 개인이면 개인이 처벌받기 때문에 못 하지.

○**백재현 위원** 전부 법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비업이란 것은? 법인만이 할 수 있는 건가요?

○**경찰청생활안전과장 하상구** 생활안전과장 하상구입니다.

예, 법인만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유대운 위원** 다 하셨어요?

○**백재현 위원** 예.

○**유대운 위원**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황영철** 예, 이제 발언하셔도 됩니다.

○**유대운 위원** 논점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 전제는 경비업 3872개의 업체 중 설립 연도별이 천구백…… 2012년도부터, 5년 이상 해 가지고 프론테이지가 얼마나 많아요, 이때 설립된 거요?

○**백재현 위원** 그런 자료 있으세요?

○**유대운 위원** 있겠지요, 당연히. 3800개 중 설립 연도가 5년 이상 된 게 몇 개나 되느냐고요. 그중 자본금이 전부 다 내가 볼 때는 소자본으로 차지했을 것 같은데 없어요? 그러면 찾아서 말씀 주시고요.

저는 논점을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법인이 5000만 원짜리 자본이라는 것은 상법에 경비업법 밖에 없습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5000만 원 법인 설립하지요, 그렇지요?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에 5000만 원 가지고 사무실 하나 차리면 자본금 잠식됩니다. 상식을 놓고 판단 하자고요, 상식을 놓고.

사무실 돈 안 주고 씩니까? 집기 돈 안 주고 삽니까? 그러니까 자본금 5000만 원 가지고 설립 하면 사무실 차리면 돈이 하나도 없다, 운영비가, 운영비가 없다는 얘기는 경비업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으로 발전할 수가 없다, 이게 상식입니다, 기본 상식.

두 번째, 여기 1000명 이상 업체가 11개, 500명에서 1000명 미만인 37개 이렇게 우량군으로 따지는 48개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도요. 여기 이 사람들이 나머지 5000만 원짜리 법인 가지고 있는 데로 막 갑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이 구조가. 왜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겁니까, 경찰청에서는?

어떤 부분을 보호하고 어떤 부분을 건전성 있게 가기 위해서 5000만 원 이상으로 올리면 어렵다 이 논리가 무엇인지 답변해 봐요, 한번. 5000만 원은 사무실 차리기도 부족한 돈이에요, 사실은. 운영경비 하나도 없어요, 최소로 차려도. 컨테이너 갖다 놓고 차리면 법인 인가가 나오니까? 안 나오지요. 법인 설립 과정을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5000만 원 가지고 법인 하나 설립했다, 운영비가 어느 정도 남습니까? 최소비

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경찰청생활안전국장 정용선** 지역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이……

○**유대운 위원** 서울, 인천, 경기를 얘기했습니다.

○**경찰청생활안전국장 정용선** 예, 자본금이 적은 데는 10% 미만 이렇게 된 것이고 나머지는 3억 이렇게 많은 데도 있고 편차가 좀 있는 겁니다.

○**유대운 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건전한 시각에서 바라보자, 소자본으로 해서 한탕주의 사업자를 막고, 여기서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니까요. 배고프면 밥 있으면 도둑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없이 어렵게 살다가 아주 경비업체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이 발생하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돈 때문에.

단적인 예가 안산단원경찰서 산하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타난 것 아니겠어요? 왜 이 부분을 간과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용은.

가장 문제 있는 부분에서 문제를 찾아보고 가장 건전성 있는 사업에서 중심을 잡아서 가운데 것을 뽑아내는 것이 그것이 범죄라는 법을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永柱 委員** 이것은 공청회를 한 번 하고……

○**유대운 위원** 이것은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소위원장 황영철** 윤재옥 위원님!

○**윤재옥 위원** 야당 위원님이 계신데 이것을 우리가 사실 안산단원서에서 있었던 노사분규 현장에서의 경비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를 우리가 좀 강화하는 그쪽으로 포인트를 맞추어야지 이 경비업 전체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이렇게 맞추면 상당히 현장의 상황을……

○**유대운 위원**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윤재옥 위원** 그러니까 현장의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법에 손을 대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유대운 위원** 그러니까 공청회 한 번 하자고요.

○**윤재옥 위원** 예, 공청회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김민기 위원** 그러면 저도 한 말씀, 지금 우리

가 심의하는 안건이 자본금을 2억 원으로 하고 또 3년 이상 경력 가진 정규직 경비원 10명 이상을 포함하자라는 내용 아닙니까? 이 입법취지는 규제와 그다음에 페이퍼 법인을 없애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이 지금 경비업체가 적정하냐는 거예요. 적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러면 공급이 많으면 아까 여기서 일을 해서, 취업을 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너무 많으면 이분들 더 어려워집니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임금이 낮아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규제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 법안에서 나온 것 2억 원이 적절하냐, 적절치 않다면 얼마냐, 제가 보기에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가능하겠습니까? 1000만 원이면 이것 전혀 안 된다는 것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2억 원인데 여기 수정안은 1억 원이 왔어요. 좋습니다. 1억 원까지는, 과거에 1억 원까지 자본금이 있었으니까 그것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규직 경비원 10명 이상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것이 없으면 페이퍼로 존재한다 이런 겁니다. 페이퍼로 존재하면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적어도 페이퍼로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사람 수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유대운 위원** 공청회를 한 번 해 보자고.

○**소위원장 황영철** 지금 위원님들께서 상정되어 가지고 논의한 내용이 첫 번째 안이 허가기준과 관련되어서 벌써 이만큼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심의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안을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안을 총괄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2시에 다시 시작을 하거든요. 내일 머리 맑을 때 논의를 더 하시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이것 지금부터 논의해 가지고 오늘 회의 이것 끝나쳐서 정리하려면 아마 적어도 두세 시간 정도는 더 논의를 해야 될 안건인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시지요, 오늘은.

그리고 지금 소방방재청이 3건의 법률안인데 이것은 간단한 법안인데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소방방재청 법안까지 오늘 심의해 주는 것으로 할 테니까 경찰청 법안심사는 이것까지 한 것으

로 하고, 일단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것은 내일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소위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이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몇 시부터 와 계셨지요?

○소방방재청차장 **방기성** 2시부터 왔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논의를 하셔서, 사실 내일로 넘기려고 하다가 오래 와서 기다리셨는데 헛된 손으로 가시면 좀 그러실까봐 심의를 하도록 다들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피곤하실 텐데 조금만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시52분)

○소위원장 **황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총덕**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정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정지 처분 시 청문 제도를 도입하는 것, 그리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이중 부과 제도를 완화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등록의 결격사유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현재 소방시설법인 등록의 결격사유를 대표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결격사유를 임원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업 대표자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속임원을 대표자로 변경해서 재등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대표자 및 임원의 준법성 고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업정지 처분 시 청문 제도 도입하는 것은 현재 등록취소 시에만 청문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시에도 청문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번 대체토론에서는 6개월만 하지 말

고 모든 영업정지 처분 시 청문 제도를 도입하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시에만 청문 제도를 둘 경우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영업정지 처분 시 청문을 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행정처분 및 과태료 이중 부과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현행은 소방시설업자가 등록사항의 변경·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인이 공사·감리를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행정처분하고 과태료를 중복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둘 중 하나만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단순·경미한 행정협력적 의무위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라든지 지위승계 신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고 영업 수행상 의무위반, 동일인이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해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부칙에 경과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의견으로 부칙 3조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규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방재청차장 **방기성** 지금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전폭 다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柱** 委員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건설업법하고 역행하는 안이 올라 왔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공사를 하는 사람이, 설계를 하는 사람이 감리를 못 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지금 건설업법에는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자기가 공사하고 감리도 자기가 해도 이상없다 이 말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안 맞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손총덕**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동일인이 공사·감리를……

○**金永柱** 委員 그러니까 동일인이……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그게 의무위반이라는 거지요

○金永柱 委員 그러니까요. 설계업이라든지 건축업이, 설계를 한 자가 감리를 못 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얼마 전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그런데 지금 이것은 공사자가 감리를 한다 이 말이거든요. 자기가 해 가지고 자기가 잘 되었다 못 되었다 하는 그런 결론이 오는 것은 시대발상에 안 맞다.

○소방방재청차장 방기성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주자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벌칙을 주는 겁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행정처분과 과태료 둘 중 하나를 부과하자 이런 뜻이지요?

○金永柱 委員 그런데 과태료만 준다고 해서, 왜냐하면 과태료만 주는 것 같으면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손실이 더 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고 과태료를 주는 것은 차라리 과태료 받고 그대로 한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예 못 하도록 해서 아주 강한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한 건물에 건축을 하는데 건축하는 것은 못 하도록 하고 소방은 하게끔 하고, 미미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백재현 위원 이것은 완화시키는 거지요?

○소방방재청차장 방기성 완화시킨다기보다 이중적 처벌이니까 처벌기준을 단일화한다는 겁니다.

○유대운 위원 건설업법하고 정반대돼요. 김 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예요.

○金永柱 委員 이것은 반대로 그다음에 또……

○유대운 위원 잠깐만요. 이 취지가 설계한 자가 시공업자를 감리를 못 하게 한 이유는 자기들 마음대로 짜고 고스톱 치지 말라는 취지의 금지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것을, 양벌규정 여기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 하나를 완화시킨다는 것은…… ‘국민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함이다’ 국민이 무슨 부담을 해요? 업자와의 관계지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백재현 위원 지금 현재 동일인이 감리와 시공을 같이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 법이?

○유대운 위원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소방방재청차장 방기성 못 하도록 되어 있지요.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을 어기면 행정처분도 하고 과태료도 이중적으로 처벌을 하는

데……

○백재현 위원 못 하게 되어 있는데 했을 경우 처벌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소방방재청차장 방기성 그렇지요.

○유대운 위원 그게 아니고요. 개정안을 보면 현행은 소방시설업자가 등록사항의 변경·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일인이 공사와 감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중복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둘 중의 하나만을 부과해서, 대체토론에 보면 그래서 국민의 부담을 줄여준다 이게 취지인데 이것은 기본 건설업 법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법률을 우리가 지금 심의하고 있는 거예요, 제출도 그렇게 한 것이고요.

○金永柱 委員 그리고 관에서는 6개월 이하라도 청문을 실시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6개월 이하라도 영업정지 건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차장 방기성 그렇습니다.

○金永柱 委員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청문을 실시하는 청문 당사자는 누가 됩니까, 예를 들면?

○유대운 위원 위반자가 되지요.

○소방방재청차장 방기성 업체지요, 업체.

○金永柱 委員 업체인데 업체만 나오는 게 아니고 청문을 시행하는 자?

○소방방재청차장 방기성 그것은 소방 관서지요.

○金永柱 委員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그 말인데, 그 말을 듣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소방인력이나, 진짜 그것은 국민들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권한 남용을 해서 나중에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거고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이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위반을 했을 경우에 무조건 영업처분을 내리지 말고 그 업자한테 한번……

○金永柱 委員 지금 6개월은 하고 있잖아요? 청문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백재현 위원 6개월 이상만 청취하는데 그것을 낮추자 이런 얘기예요.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처분을……

○백재현 위원 한 번 더 들어보자는 이런 취지니까……

○**金永柱 委員** 그런데 기간을 낮춰 주지는 못하지. 전체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업정지에.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전체를 다 들어봐라,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유대운 위원** 이 취지는 김영주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이 청문이라는 것은 현재까지 굴러온 관례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관청에 가기 싫어합니다. 청문기관이 바로 감독기관입니다. 잘못되면 청문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전반적인 취지가 맞습니다.

○**金永柱 委員** 맞아요. 청문을 하려고 하면 관이 하지 말고 제3자 조건을 붙여 가지고……

○**소방방재청차장 방기성** 그러니까 처벌을 받게 되면 업체의 얘기를 들어보지 않고 그대로 처벌했었는데 적어도 얘기는 한번 들어본다는 취지입니다.

○**박성호 위원** 어느 경우나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 법만 특이하네요.

○**유대운 위원** 그런데 너무 범위를 확대했다는 것이지요.

○**백재현 위원** 1항은 소방시설업 등록 결격사유는 개정안 그대로 받으면 될 것 같고요. 인원까지 확대하는 데 동의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6개월 정도 영업정지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되나요, 1년어? 꽤 많다고 보는 것인가요?

○**소방방재청소방정책국장 권순경** 최근 3년간에 6개월 이상 영업정지한 것은……

○**백재현 위원** 6개월이면 굉장히 중한 것 아니에요? 사실은 영업을 6개월 정도 쉬게 하면 그 업소를 폐쇄하는 것이지 6개월 후에 다시 동일업종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소방방재청소방정책국장 권순경**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대신에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의 영업정지는 있었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소방 시설 위반 업자인 업소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6개월 정지라는 것이?

○**소방방재청소방정책국장 권순경** 예.

○**백재현 위원** 그 시설을 못 쓰게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6개월 동안에 되는 것은, 넘는 것만 청

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6개월은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얘기를 들어보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소방방재청소방정책국장 권순경** 예.

○**백재현 위원** 그러면 건수가 많아지는 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비리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데 단번에 결정을 안 하고 청문을 듣는 제도는 국민들한테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부 다 푸는 것이 걱정인 것인데 이것이 문제인데 한 3개월 정도 낮춰서 3개월은 한번에 가고 3개월 이상만 청문절차를 거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방재청차장 방기성** 그것도 괜찮습니다.

○**유대운 위원** 아니, 그 이전에 이런 법률이 있어요. 관청은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률에 보면 소송제도가 있어요. 억울하면 청문에 바른 말을 하면 감을 해 주겠다 이런 뜻도 포함된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상위법이 또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 충돌은 어떻게 얘기할래요?

○**소방방재청차장 방기성** 그것은 절차지요. 여기서 청문하든 안 하든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을 때 불복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으로 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소원전치주의가 먼저 하는 것이지요.

○**소방방재청소방정책국장 권순경** 지금까지는 등록 취소할 때만 불러서 청문을 했습니다.

○**유대운 위원** 공무원 소청심사법률하고 달라요. 그것처럼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소방방재청소방정책국장 권순경** 저희들은 그래서 6개월 영업정지까지 청문을 하자고 의견을 냈는데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6개월 미만도 일단 영업정지 건은 한번 들어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 수정안이었습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타 면허와 관련된 것에서도 취소뿐만이 아니라 영업정지와 관련된, 자격정지와 관련된 것은 청문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유대운 위원** 그것은 넘어간다 하더라도 동일감리 문제는……

○**소위원장 황영철** 유독 지금 동일인이 공사와 감리를 수행하는 제13호에 대해서만 이것을 삭제한 사유가 무엇이지요? 그것만 삭제를 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유대운 위원** 국민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차장 방기성** 이 얘기가 나온 것은 청와대에 설치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의미로 이것이 안건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개정하라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다른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할 때 타 법 심사할 때 똑같은 내용으로 권고 받아 가지고서 법 개정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다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면 훨씬 위원님들이 좋은 취지로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소방방재청차장 방기성** 죄송합니다.

○**유대운 위원** 권고사항을 좀 갖다줘요.

○**소위원장 황영철** 지금 말씀대로 이것은 국민들의 편의 및 권익 증진을 위해서 권고사항을 개정하는 것이니까 물론 의견이 조금은 다르실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큰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대운 위원** 권고사항은 한번 확인하고 가결해야지요.

○**소위원장 황영철** 혹시 운영상에 문제가 생기면 유대운 위원님께서 다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3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우 의원 대표발의)

3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록 의원 대표발의)

(19시05분)

○**소위원장 황영철** 다음은 제35항 및 제36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유승우 의원님하고 김정록 의원님께서 각각 제출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내용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승우 의원님 안은 피난용 계단이송의자 등을 설치하려는 것이고, 김정록 의원님 안은 다수인피난설비,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도록 다수인피난설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림이 7쪽에 나와 있습니다.

유승우 의원님 안은 피난용 계단이송의자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김정록 의원님 안은 이런 계단 같은 다수인이 한꺼번에 피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현실성 있는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겠지요.

○**소위원장 황영철** 정부 측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소방방재청차장 방기성** 이것은 지난번에도 상당히 논란이 돼서 무효화됐던 조항인데요. 저희들로서는 이 법 조목에 특정한 시설물을 표시하는 것은 법 형식상에도 그렇고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은 피난시설이라기보다는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편의시설이라고 한다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용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황영철** 정부 측 의견에 이의 없으시지요?

○**백재현 위원** 업고 뛰는 것이 최고지.

○**유대운 위원** 동의합니다.

○**金永柱 委員** 지금 현재 이 건물의 면적 기준은요? 건물의 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 돼야 이것을 설치한다 안 한다는 그런 이 법의 취지 말이예요.

○**소방방재청차장 방기성** 면적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판매 의료 노유자 업무 숙박 공장 자동화 관련 시설 등에서는 이런 소방설치를 해야 될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면적 기준은 따로 있지 않고요.

○**金永柱 委員** 면적 기준이 없으면 건설업자가 건물 하나 못 지어요, 수지가 안 나와서, 이것 다 설치하고 계단 설치하면은요. 완전히 이것은 건축을 하지 말라는 그런 법이 됩니다, 면적이 없으면.

○유대운 위원 지금 취지가 이 그림으로 해서 안 된다고 반대하는 취지 아니었어요?

○소방방재청차장 방기성 그렇습니다.

○유대운 위원 반대하는 취지인데요?

○金永柱 委員 그러니까 혹시……

○소위원장 황영철 지금 전문위원 검토 및 정부 측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소방방재청 법안 다 끝났지요?

○소방방재청차장 방기성 예.

○소위원장 황영철 오늘 하기로 한 안전이 더 있습니다마는 내일 다시 안전심사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 장시간 동안 심사에 임해 주신 소위원님들, 또 우리 수석전문위원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민기	金永柱	김현	박성호
백재현	유대운	윤재욱	황영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전문위원	임재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행정예산심의관	노형욱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	심보균
인사정책관	김동극
윤리복무관	김석진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오진영
경찰청	
차장	김정석
기획조정관	이만희
생활안전국장	정용선
교통관리관	최명식
소방방재청	
차장	방기성
소방정책국장	권순경